

2024회계연도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821호, 제2822호, 제2823호
- 다. 제출일자 : 2024. 5. 26.
- 라. 회부일자 : 2024. 5. 29.

2. 제 안 이 유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 산 개 요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172,085	172,085	234,283	214,650	625	19,008	91.6%

- 세입예산현액은 1,720억 8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342억 83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1.6%인 2,146억 50백만원을 수납하고 6억 25백만원은 정리보류 처분하였으며, 190억 8백만원은 미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4	462,476	3,833	312	38 (-38)	79 (-79)	60,507 (-60,509)	466,620	460,460	2,821	-	2,821	22	3,317 (0.7%)

- 예산액 4,624억 7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 33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 1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666억 20백만원으로, 이중 98.7%인 4,604억 60백만원을 지출하고 0.6%인 28억 2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3억 1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예산 이용은 없음.

- 전용

- 예산 전용은 1건에 38백만원으로,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업에서 발생함.

- 변경

- 예산 변경은 5건에 79백만원으로,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사업 등에서 발생함

- 예비비

- 예비비 지출은 1건에 3억 12백만원으로,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판결금임.

- 이 체

- 예산 이체는 21건에 605억 9백만원으로, ’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보행환경개선과) 및 부서별 업무조정에 맞추어 ‘도로부지 실태조사’,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등의 사업을 실 내부에서 이체하였으며, 건설혁신과의 부서 이관에 따라 기본경비 2백만원을 실 외부(기술심사담당관)로 이체하였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9건에 28억 21백만원으로, 예산현액 4,666억 20백만원 대비 0.6%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33억 1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4,666억 20백만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4	466,620	3,317	0.7	
2023	471,988	4,185	0.9	
2022	731,178	3,206	0.4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정산잔액 : 24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4억 71백만원
- 낙찰차액 : 2억 39백만원
- 지출잔액 : 25억 83백만원

나 .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8,000	8,000	8,000	8,000	0	0	100.0%

○ 세입예산현액은 80억이고, 80억이 징수결정되어 80억 전액 수
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20,217	5,288	-	-	-	-	25,505	12,135	13,353	-	13,353	-	17 (0.1%)

○ 예산액 202억 1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88백만원을 포
함한 예산현액은 255억 5백만원으로 이 중 47.6%인 121억 35
백만원을 지출하고 52.4%인 133억 5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
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과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은 6건에 133억 53백만원으로, 예산현액 255억 5백만원 대비 52.4%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255억 5백만원 대비 0.1%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24	25,505	17	0.1	
2023	27,008	5,433	20.1	
2022	43,696	393	0.9	

- 발생원인별 내역

- 지출잔액 : 17백만원

다 . 광역 교통 시설 특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7,230	7,230	7,231	7,231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72억 30백만원이고, 72억 31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2억 31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7,230	3,480	-	-	-	-	10,710	3,732	3,543	3,500	43	3,250	186 (1.7%)

- 예산액 72억 3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80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7억 10백만원으로 이중 34.8%인 37억 32백만원을 지출하고 33.1%인 35억 4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86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해당없음
- 변 경 : 해당없음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2건에 35억 원이고, 사고이월은 1건에 43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107억 10백만원 대비 33.1%인 35억 43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1억 86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07억 10백만원 대비 1.7%임.

집 행 잔 액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현 액	집 행 잔 액	불 용 률 (%)	비 고
2024	10,710	186	1.7	
2023	11,817	3,874	32.8	
2022	21,009	-	0.0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억 86백만원
- 지출잔액 : 640원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 산 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84,827	84,827	84,827	84,827	-	-	100.0%

- 세입예산현액은 848억 27백만원이고, 848억 27백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848억 27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679,740	130,406	3,593	360 (-360)	2,782 (-2,782)	-	813,738	706,821	80,032	15,420	64,612	89	26,795 (3.3%)

- 예산액 6,797억 4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04억 6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35억 9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37억 38백만원으로 이중 86.9%인 7,068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9.8%인 800억 32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267억 95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 용 : 해당없음
- 전 용 : 예산 전용은 2건에 3억 60백만원으로
 -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3억원
 - 노후 포장도로 정비(자산및물품취득비 → 전산개발비) 60백만원임.
- 변 경 : 예산 변경은 16건에 27억 82백만원으로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16억 31백만원
 -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억 37백만원
 -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1억 83백만원 등임.
- 예비비 : 예비비사용은 3건에 35억 93백만원으로
 -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0억 69백만원
 - 월드컵대교 건설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 8억 69백만원
 -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행정소송 6억 54백만원임.
- 이 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10건에 154억 20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72건에 646억 12백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은 예산현액 8,137억 38백만원 대비 9.8%인 800억 32백만원임.

5)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67억 95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8,137억 38백만원 대비 3.3%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응률 (%)	비고
2024	813,738	26,795	3.3	
2023	973,032	41,000	4.2	
2022	898,055	45,835	5.1	

- 발생원인별 내역

- 보조금 정산잔액 : 12억 92백만원
- 예산절감액 : 3억 96백만원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7억 50백만원
- 낙찰차액 : 114억 15백만원
- 지출잔액 : 129억 43백만원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4	1,076,717	72,609	228,373	0	0	31,713	716,092	27,930	1,076,717	403,691	631,601	11	41,414
2023	1,031,653	29,872	221,695	0	0	32,645	686,071	61,370	1,031,653	242,941	716,092	11	72,609
2022	1,475,780	4,718	473,024	39,000	200,000	16,832	719,036	23,170	1,475,780	759,816	686,071	20	29,872

-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283억 73백만원, 이자수입 317억 13백만원, 예치금회수 7,160억 92백만원, 전년도이월액 726억 9백만원, 기타 보조금반환수입 279억 30백만원을 합한 1조 767억 17백만원이며
- 지출은 비용자성사업비 3,747억 44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14억 14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1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316억 1백만원을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바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4	83,383	1,027	-	1,310	31,727	-	49,319	83,383	41,621	40,647	-	1,115
2023	73,023	1,382	-	1,049	26,212	-	44,380	73,023	40,269	31,727	-	1,027
2022	59,703	1,081	-	620	16,893	-	41,109	59,703	32,109	26,212	-	1,382

-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0억 27백만원, 이자수입 13억 10백만원, 예치금회수 317억 27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93억 19백만원을 합한 833억 83백만원이며, 이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기금관리비로 기금총액의 49.9%인 416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406억 47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11억 15백만원은 감리비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함.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172,085	172,085	234,283	214,650	625	19,008	91.6%
2023	172,196	172,196	198,385	176,017	2,123	20,245	88.7%
2022	155,722	155,722	203,681	183,404	988	19,289	90.0%

가) 개요

-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20억 85백만원이었으나 실제 2,342억 83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91.6%인 2,146억 5천만원이 수납되고 6억 25백만원은 정리보류 처리하였으며, 190억 8백만원은 미수납되었음.

나) 세수추계

-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2,342억 83백만원)의 경우 예산액(1,720억 85백만원) 대비 136.1%로 총 621억 98백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87억 93백만원 증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 378억 32백만원 증가, '지난연도수

입' 148억 45백만원 증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변상금' 69억 95백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표] 참조).

[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편성목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실수납액	차액 (b)-(a)	비고
경상적 세외수입					
212-01 도로사용료	84,626	79,387	77,395	△5,238	○국토교통부에서 어려운 경기 여건 고려 도로점용료 감면 요율(25%)에 따라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부족
212-09 기타사용료	243	9,036	9,019	8,793	○(보상비)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관련 시유재산의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비 징수결정에 따른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보도상영업시설물 대부료) 예산편성 시 최근 5년간 평균 징수결정액을 고려하여 산정, 코로나19 대부료감면 시기 포함되어 예산액(241백만원)이 징수결정액(317백만원)적게 추계됨
임시적 세외수입					
224-07 그외수입	18,124	55,956	55,161	37,832	○승소사건의 소송비용 징수액 등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건(39,505백만원 과다) 징수 ○월평균 징수액 및 최근 5년간 징수율 등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며, 상가임차인의 전기 및 상하수도 실사용료 등을 정산하여 징수함에 따라 편성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225-01 지난연도수입	3,939	18,784	5,256	14,845	○지난연도에 체납된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예산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액이며, 예산액은 평균 체납액 징수율 감안하여 산정하여 차액 발생 ○전년도까지 발생한 미수납세액으로 무재산 및 납세태만 등의 사유로 미납부시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 평균징수액 및 징수율을 고려하여 추계함에 따라

					예산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발생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33-01 변상금	1,931	8,926	7,423	6,995	○ (도로변상금)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 변상금 부과(48억원) 등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초과 ○ (지하도상가 변상금)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점포를 무단점유함으로써 인해 부과되므로, 사전예측이 곤란하여 편성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에 차이 발생

○ 편성목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발생 사유를 살펴보면,
먼저 정상적 세외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를 수납받는 것으로

- 최근 3년치 평균 부과액에 ‘24년 공시지가 상승률(94.44%)을 반영해 예산액을 846억 26백만원으로 계상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로법 제68조¹⁾에 근거한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을 요청²⁾함에 따라 당초 징수결정액에 25%를 감면하여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이가 발생한 것임.

1)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9.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1509호, 2024.3.14.

- 타과목에는 속하지 않는 사용료수입인 ‘기타사용료’는 예산액 2억 4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이 90억 36백만원으로 그 차가 87억 93백만원인데,
 - 이는 당초 예측이 불가해 예산액을 미편성했던 국토교통부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³⁾ 관련 시유재산의 지하구간 사용에 따른 보상비 87억 14백만원을 징수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예산액 181억 24백만원 대비 308.7%인 559억 56백만원을 징수결정하였음.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건⁴⁾의 승소에 따른 판결금 395억 18백만원 등을 징수결정함에 따른 것임.
-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사용료 등에 대한 체납액 등으로 구성된 세외수입인 ‘지난연도수입’은 예산액 39억 39백만원 대비 476.9%인 187억 84백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 도로사용료, 도로변상금 및 보도상영업시설물 사용료 체납액의 경우 세입예산액은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징수율(도로사용료 12.7%, 도로변상금 13.3%, 보도상영업시설물 24.4%)을 감안해 계상하나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3) 수도권 남서부와 서울 도심부를 직결하는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으로 2020년 4월 착수한 해당 사업은 오는 2026년 말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임.

4) ① (주)하림과의 2심 소송 승소에 따라 395억 05백만원 반환받기 위해 징수(가지급금에 법정이자율 5%를 가산)
 ② 대림산업주식회사와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 시 승소로 인해 확정된 소송비용 13백만원 징수

발생한 것임.

-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 ‘변상금’은 예산액 19억 31백만원 대비 462.2%인 89억 26백만원을 징수결정했는데,
 - 변상금 예산액은 최근 3년 평균액으로 계상한 반면, 사전 예측이 불가했던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 시설물의 점용허가 취소 판결 결과에 따른 변상금 부과액 48억 26백만원과 지하도상가 임차인의 계약기간 이후 점포 무단점유(29건)에 따른 변상금 13억 12백만원 등이 추가되어 징수결정되었기 때문임.

다) 미수납액

-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190억 8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공유재산임대료	7억 7백만원
- 도로사용료	19억 92백만원
- 기타사용료	18백만원
- 기타사업수입	9억 13백만원
- 기타이자수입	32백만원
- 불용품매각대금	1백만원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백만원
- 그외수입	7억 95백만원
- 지난연도수입	129억 4백만원
- 변상금	15억 3백만원

- 기타과태료
- 부담금

99백만원
42백만원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액은 7억 7백만원으로 전년(4억 49백만원) 대비 2억 58백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납부태만으로 인한 지하도상가 임대료 미수납액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이뤄졌던 임대료 감면이 ‘23.6월 종료됨에 따라 종전 임대료 감면으로 감소되었던 미수납이 ‘23회계연도에 이어 금회 역시 전년대비 증가하였고 지속적인 미수납액의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지난년도수입’ 미수납액은 129억 4백만원으로 전년(145억 77백만원)대비 16억 73백만원이 감소했으나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68%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사유별 현황([표] 참조)를 살펴보면, ‘납세태만’이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 190억 8백만원 중 65%인 123억 51백만원으로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바,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재산압류 등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음.

[표]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미수납액	19,007,849	100%
무재산	1,944,888	10.2%

행방불명	278,694	1.5%
납세태만	12,350,978	65.0%
폐업 또는 부도	660,431	3.5%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15,582	0.1%
격리 또는 입원	957	0.0%
소송계류	13,658	0.1%
국외이주	67,143	0.4%
자금압박	235,807	1.2%
기타	2,900,533	15.3%
납기미도래	539,178	2.8%

라) 정리보류

-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정리보류 총액은 6억 25백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지난년도수입	6억 25백만원
----------	----------

- 일반회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소멸시효 완성’과 ‘무재산’이 전체 정리보류 총액 중 각각 42.3%와 5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 소멸시효 완성과 무재산에 따른 정리보류는 사실상 징수 포기 와 다름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있어 실질적인 세입 감소를 유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무재산에 의한 정리보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조사 하는 노력이 부족했거나 체계적인 재산 조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리보류되는 경우는 체납에 대한 적절한 독촉, 징수 또는 법적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시효 소멸이나 무재산에 따른 정리보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또는 점검시스템의 구축 또는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여겨짐.

[표] 일반회계 정리보류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정리보류		624,606	100%
	체납처분 중지	2,921	0.5%
	소멸시효 완성	264,043	42.3%
	행방불명	1,268	0.2%
	무재산	337,236	54.0%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면제	5,197	0.8%
	평가액 부족	6,881	1.1%
	기타	7,060	1.1%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462,476	3,833	312	38 (-38)	79 (-79)	60,507 (-60,509)	466,620	460,460	2,821	-	2,821	22	3,317 (0.7%)
2023	449,979	1,765	20,244	215 (-215)	104 (-104)	3,095 (-3,095)	471,988	463,878	3,833	1,131	2,702	92	4,185 (0.9%)
2022	662,673	3,470	40,553	- (-)	13 (-13)	90,996 (-66,514)	731,178	726,193	1,765	694	1,071	15	3,206 (0.4%)

가) 개 요

- 예산액 4,624억 76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억 33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3억 1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666억 2천만원으로, 이중 98.7%인 4,604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0.6%인 28억 21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33억 1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은 ‘도로부지 실태조사’ 등 5건([표] 참조)으로, 이는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사례로 신중한 예산 편성을 통해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관리과	기본경비(도로사업소 6개소)	2,567	2,096	471	18.3%
2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40	9	31	77.5%
3	보행환경 개선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20	10	10	50.1%
4	보행환경 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959	475	419	43.7%
5	도로시설과	공동구 관리 위탁	13,014	12,693	321	2.5%

○ 먼저, ‘도로부지 실태조사’ 사업은 市 도로부지 무단점용 등 지적측량이 필요한 자치구에 측량비를 지원하여 변상금 부과로 인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보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천만원 중 77.5%인 3천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서울시가 「도로법」 제72조⁵⁾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근거하여 도로점용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무단점용 대상 필지의 실태조사를 위한 측량비를 자치구에 지원함에 따라 측량조사를 필요로 하는 자치구를 상·하반기 수요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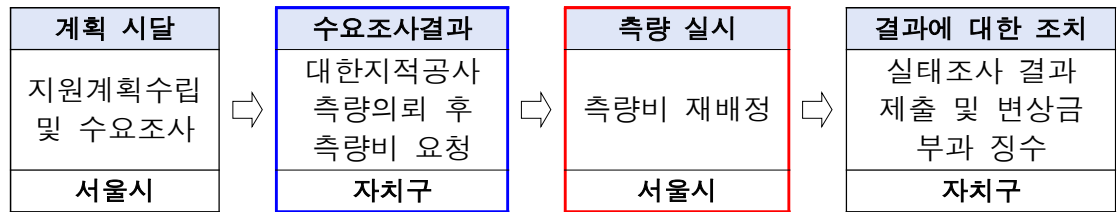
5) 「도로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67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변상금”으로 본다.

사하였으나 1개 자치구(금천구)에서만 신청함에 따른 것임.



[그림] 市 도로부지 실태조사 사업 추진절차

-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건수가 2건도 안되어 불용률이 75%에 달해 매년 결산 시 반복적으로 예산 불용에 대해 지적되어 왔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바, 예산편성 전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 최근 5년간 도로부지 실태조사 지원내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건수(건)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24년	1	40	9 (22.5%)	31 (77.5%)
2023년	1	40	5 (13%)	35 (88%)
2022년	3	50	18 (36%)	32 (64%)
평균	1.7	43.4	10.7 (25%)	32.7 (75%)

-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는 무질서한 거리가게 정비를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도시 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9억 59백만원 중 43.7%인 4억 19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주요 불용 사유는 종로구 저잣거리 정비사업 중단에 따른 3억 93백만원 불용과 관악구·구로구·동작구 거리가게 정비사업⁶⁾

6) 2024년 사업: (관악구) 신대방역 거리가게 관악S특화거리 조성사업 (광진구) 강변역 1번 출구 일대

의 집행잔액 3천 5백만원이 발생한 데 기인함.

- 종로구 저잣거리 정비사업은 당초 2022년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 정비사업 철회로 확보된 예산(6억 94백만원)을 활용해 종로구 내 2개소(저잣거리, 꽃시장)를 정비하고자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저잣거리 1개소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고, 사업추진 및 전기공사 설계 지연으로 명시이월(22년 6억 94백만원) 및 사고이월(23년 3억 94백만원)이 반복된 바 있음.
- 이 과정에서 도로 하부 공동조사('24.4월) 결과⁷⁾ 지반이 전반적으로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7월 정밀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이 매우 미흡한 'D등급'으로 확인되어 정비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⁸⁾됨에 따라 종로구는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타절(24.9.10.)⁹⁾하였음.

거리가게 정비 (구로구)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거리가게 개선사업 (동작구) 특화거리 환경개선 사업 및 가림막 채도색 공사

7) 서울시 도로관리과 공동조사 결과(2024.4.18. 시행): 저잣거리 도로 하부 지층 상태 전체적으로 불량

▶ 저잣거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C8~C9구간의 지반침하(약 15cm 이상)는 지반 내 하수관의 장기 누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속적인 누수에 의한 지반교란 및 침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수관의 누수방지를 위한 정비보수가 필요함.

8) **정밀안전점검 D(미흡) 등급**: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저잣거리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결과보고서

- 본 시설물의 주요 부재인 강재기둥 하부에서 주변 우수 및 표면수의 유입에 의한 부식심화 및 단면손실이 발생하여 기둥의 저항 단면 감소로 인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됨. 따라서 기둥 교체 시공 또는 덧댐판 보강 용접을 실시하여 장기 내구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은 명확한 구조계산 및 설계를 통해 시공된 구조체가 아니며, 시공당시 시공오류 및 공용 중 주요부재에서 단면손실 및 침하변형에 의한 구조적 손실이 발생한 상태로 장기적 시설이용을 위해서는 재시공 또는 보강이 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적절한 재시공 및 보강계획에 따른 유지관리가 진행되기 전에 별도의 추가 하중 및 시설증대는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한하여야 함.

9) '노점특화거리 저잣거리 전기공사 계약해지 및 타절준공 검토 보고' - 종로구 가로정비과-3820호, 2024.9.10.

- 이는 사업계획 수립 과정이나 사전 조사에서 사업 타당성 및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예산의 이월 반복과 불용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면밀한 사전 조사와 예산편성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일반회계 예산 전용은 1건에 38백만원으로,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업에서 발생함.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과	간선 도로망 확충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201-01 사무관리비	374	38	-	24-08-13	민자도로 추진 관련 끼임사고 예방 라디오 홍보 및 도시계획시설 열람공고를 위한 비용 편성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	38		

-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에서 사무관리비 3천 8백만 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는데,
 - 이는 당초 민자도로의 오진입에 따른 끼임사고 예방 라디오 홍보 및 도시계획시설 열람 공고 등을 위한 광고비용을 사무 관리비로 편성했었으나

< 라디오 홍보 >

- 사 업 명 : 진입제한 차량의 오진입 방지를 위한 라디오 홍보

○ 사업내용 : 출퇴근시간대 TBS, TBN을 활용한 방송 홍보 시행

- 홍보기간 및 횟수 : 6개월('24.6~'24.12) 간 292회

○ 소요예산 : 32,560천원

- 광고료 : 29,600,000원 = TBS(18,700,000원) + TBN(10,900,000원)

- 수수료 : 2,960,000원 = '광고료 29,600,000원' 의 10%

< 신문 광고 >

○ 사업명 :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관련 열람 공고

○ 사업내용 :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열람 공고 시행

-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 소요예산 : 5,000천원

- 행정안전부의 '2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변경에 따라 광고비용 편성·집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세출과목이 기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른 것임.

라) 이 체

- 일반회계 예산 이체는 21건에 605억 9백만원으로, 건설기술정책관으로 1건 2백만원 이체하였고 나머지 20건 605억 7백만원은 재난안전실 내부 이체전임.

- 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재난안전실 내 '보행환경개선과' 신설로 재난안전실 내 보도 유지관리 관련 업무가 이관(도로관리과→보행환경개선과)되고, 기존 재난안전실 건설혁신과의 부서 이관(재난안전실→건설기술정책관)에 따라 기본경비를 이체함에 따른 것임.

[표] 재난안전실 일반회계 예산 이체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1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여업무 수행경비	69	2	-
	건설기술 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여업무 수행경비	12	-	2
2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40	40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지 실태조사	201-01 사무관리비	-	-	40
3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1-14 기타보상금	2	2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1-14 기타보상금	-	-	2
4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18	18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료 징수 포상	303-01 포상금	-	-	18
5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	4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4
6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395	395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	-	395
7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560	560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	-	560
8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4,335	4,335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4,335
9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1,131	1,131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1,131
10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773	773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773
11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	12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	12
12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401-01	6,763	6,763	-

연번	실·본부·국명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감액	증액
			유지관리	시설비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6,763
13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1,161	1,161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자치구 위탁관리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1,161
14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1	1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201-01 사무관리비	-	-	1
15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102	102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개선	401-01 시설비	-	-	102
16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43,824	43,824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료 등 징수교부금	308-02 징수교부금	-	-	43,824
17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124	124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점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01-02 공공운영비	-	-	124
18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500	500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	-	500
19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753	753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교통안전관련 도로부속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	753
20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67	8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	-	8
21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	0.4	-
	재난안전실	보행환경개선과	기본경비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	0.4

마) 변경 사용

- 일반회계 예산변경은 5건에 79백만원으로, ‘재난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등의 사업에서 발생함.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재난 안전 정책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382	37	-	24-11-20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130	-	37		
2	재난 안전 예방과	재난상황관리	재난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212	14	-	24-06-12	어린이 안전이어로즈 발대식 개최 비용을 위한 예산변경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1	-	14		
3	재난 안전 예방과	재난상황관리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9	11	-	24-10-16	안전상 시상식 개최 비용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25	-	11		
4	도로 관리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통합지하안전 관리시스템 구축	207-02 전산개발비	1,338	14	-	24-12-09	지반침하 사전예방 대책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예산변경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	201-01 사무관리비	21	-	14		
5	도로 시설과	지하도상가 관리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81	4	-	24-08-27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에 따른 지하도상가 사용료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01-01 사무관리비	380	-	4		

- ‘기본 경비’ 중 국내여비(202-01)에서 3천 7백만원을 사무관리비(201-01)로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서울재난안전포럼 개최, 재난 매뉴얼 인쇄 등의 지출 증가로 사무관리비 예산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여비 집행 잔액의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 다음으로, 동일 단위사업인 재난상황관리 내 ‘재난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의 공공운영비 1천 4백만원을 ‘안전보안관 운영 및 지원’의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등 안전문화활동에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발대식을 개최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 1천 1백만원을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의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한 것은 재난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시상식 개최를 위한 예산이 전년 대비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음.
- 다음으로, ‘통합지하안전관리시스템구축’에서 ‘지하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1천 4백만원을 변경사용했는데,
 - 이는 서대문구 연희동 지반침하 사고(’24.8월) 이후 지반침하 발생으로 시민 불안감이 급증하고 사전예방 중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반침하 관리대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반침하 사전예방 대책 심포지엄’을 긴급히 개최함에 따른 것으로 변경사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에서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로 370만원 변경해 사용한 것은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예산편성 시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2.6%)를 반영

하였으나 최종 확정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3.6%)함에 따라
 사용료가 인상¹⁰⁾됨에 기인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바) 예비비

○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건에 3억 12백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312	24-08-01	사유지 도로시설로 인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패소로 인해 판결금 지급
합계	1건	312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건은 원고(주식회사 하나은행)가 원고 소유의
 강북구 미아동 3-467 도로(1885m²), 8-85 도로(236m²), 8-367 도로
 (567m²) 부지 전부 또는 일부를 시가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료상당의 부당이
 득금을 반환해야 하다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시가 패소하여 판
 결금(원금 2억 79백만원, 이자 3천 3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 이는 1심에서 사건의 각 토지가 도로 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되었
 고 시도로 노선인정 공고된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보상을 하였거
 나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시가 패소하고 항소 포기 결정함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
 해금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예비비를 지급한 것으로 부득이함이
 인정된다 하겠음.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출입구 사용료	'24년 편성 금액 ('23년 전망 2.6%)	'24년 집행 예정 금액 ('23년 하반기 확정 3.6%)	비 고
	380,050,000원	383,750,400원	(부족) 3,700,400원

사) 차년도 사고이월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등 총 9건에 28억 21백만원임.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중대재해예방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계획 개선	207-01 연구용역비	100	81	81.2%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142	44	31.0%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시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201-01 사무관리비	259	22	8.4%
도로관리과	서울 지하지킴이 관측망 설치 운영 검토	401-01 시설비	196	116	59.1%
보행환경개선과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401-01 시설비	955	66	6.9%
보행환경개선과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6,240	1,466	23.5%
보행환경개선과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6,763	879	13.0%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사면 붕괴 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401-01 시설비	500	83	16.5%
도로시설과	공동구 설치 기본계획 수립	401-01 시설비	131	66	50.0%
계			15,284	2,821	18.5%

- ‘중대재해 예방활동 및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 교육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1억 42백만원 중 30%인 4천 4백만원을 이월하였음.

- 중대시민재해시설 법정 의무 이행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전문

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해 시행되고 있는데 상반기 이행점검이 당해연도 5월부터 9월까지 시행되고 하반기 이행점검이 당해연도 12월부터 차년도 3월까지 시행됨에 따라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임.

□ 2024년 중대시민재해시설 법정 의무 이행점검

- 점검기간 : '24. 12. 26. ~ '25. 4. 23. (약 4개월 소요)
- 점검대상 : 26개 실·본부·국 / 중대시민재해 시설 1,038개소

합계	공중이용시설(938개소)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물
	도로교량	건축물 등	상하수도 등	터널·지하시설	옹벽 및 사면		
1,038	376	184	144	190	44	17	83

- 점검방법 : 실·본부·국 자체점검 + 전문기관·중대재해예방과 확인점검

① 자체점검	② 적정성 검토	② 현장점검	③ 결과정리 및 보고
(실·본부·국 담당자) ▸ 의무이행 자체점검 ▸ 점검결과, 증빙자료 제출	(전문기관, 중대과) ▸ 자체점검 결과, 증빙자료 검토	(전문기관) ▸ 이행실적 미흡시설 현장점검	(전문기관, 중대과) ▸ 점검결과 정리 및 최종보고
'24. 12월 ~ '25. 1월	'25. 1 ~ 2월	'25. 2. 19. ~ 3. 12.	'25. 3~4월

- 참고로, 시의 법정 의무 이행점검의 경우 실국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전문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행실적 미흡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정리하고 이행점검 최종보고를 마무리하는데까지 통상 4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따라서 이행점검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후반기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 지하 지킴이 관측망 설치 운영 검토’는 서울시 현장 실측 기반 지하 관측망 구축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설비 당해연도 예산현액 1억 96백만원 중 59.1%인 1억 1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은 기반침하 관측망 계획 및 설치 기준을 수립하고 기반침하 관측망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방안 마련을 목표로 당해연도 내 완료할 예정('24.12월)이었으나
- 기반침하 관측망 자료 확보 및 시스템 검증을 위해 관측망 시범설치를 확대(2개소→4개소)¹¹⁾하고 이에 따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자 2회 설계변경¹²⁾함에 따라 준공이 연기('25.2.28.)되어 이월한 것임.
- 설계변경의 사유는 공감할 만하나 잦은 설계변경은 준공기한 연기나 사업비 증액 등의 부작용을 낳는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임.

○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은 서울시도 내 8개소¹³⁾ 방음벽

11) 관측망 시범설치 (4개소): 강서구 마곡동 2개소(연약지반), 서대문구 연희동 1개소(24년 8월 대형 기반침하 사고 발생), 성동구 성수동 1개소(공동 및 기반침하 다수 발생)

12) 1차 계약변경

- 준공기간 : '24.12.13. → '25.1.31.

- 계약금액 : 191,670천원 → 222,370천원(증 30,700천원)

※ 증가액 30,700천원은 재난관리기금 활용

2차 계약변경

- 준공기간 : '25.1.31. → '25.2.28.

- 계약금액 : 222,370천원(변경없음)

13) 2024년도 방음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8개소: (성북구) 석관중학교, 동망봉터널 (노원구) 수락초·중학교, 월계주공A (성동구) 옥정중학교 (중랑구) 신현초등학교 (서부도로사업소) 녹사평대로 (광진구) 광양중·고등학교

교체 및 신설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당해연도 예산현액 62억 4천만원 중 23.5%인 14억 66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광양중·고등학교 방음벽’ 교체 공사 중 기존 방음벽 철거 과정에서 실 기초가 설계내역과 상이하게 확인되어 철거 방법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방음벽 안전점검 및 안전성평가 용역’을 추가로 실시(’24.10월~12월)하고, 이에 따라 기초 처리방안을 반영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일정이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 동 사업이 도로와 근접한 학교 내 소음 저감을 위해 신속히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사와 현장 여건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된 만큼 설계단계에서 보다 정밀하게 사전 조사하여 설계변경에 따른 일정 지연 및 예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도로부속시설물 일상 유지관리’는 시설비 당해연도 예산현액 67억 63백만원 중 13%인 8억 7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는 ‘미끄럼방지포장’ 8억 34백만원과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 공모 용역’ 4천 5백만원에 해당함.
- 먼저, ‘미끄럼방지포장’은 남산 버스 미끄럼 사고(’24.8월)를 계기로 미끄럼방지포장(수지계 표면처리 방식)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시는 사업을 일시 보류¹⁴⁾하고 미끄럼방지포장 개선TF를 통해 개선 방안 수립 후 사업을 재

14) 미끄럼방지포장 관련 협조요청 (보행환경개선과-3621, 2024.9.27.)

: 시공 예정인 미끄럼방지포장(수지계 표면처리 방식) 공사에 대해 보류 요청

개('24.11월)하였으나 동절기가 도래하여 포장 품질 확보를 위해
8억 34백 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미끄럼방지포장 개선 TF]

- 목 적: 미끄럼방지포장(수지계 표면처리방식) 문제점 및 대안 검토
- 구성계획: 실무 TF팀 구성(5명 내외)
 - (구성부서) 재난안전실(도로관리과, 보행환경개선과, 도로시설과), 교통실(보행자전거과), 건설기술정책관(품질시험소_토질재료시험과)
- 운영계획: 미끄럼방지포장의 실효성 검증
- 개선방안
 - 설치방안
 - 현장 측정 결과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존 아스콘포장 관리 철저를 통한 노면의 마찰저항력 유지 권장
 - 노면 미끄럼과 상관없이 사고위험 및 감속 유도가 필요한 경우 미끄럼방지포장보다 감속유도시설 설치
 - 미끄럼방지포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_국토교통부」에 따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만 설치
 - 미끄럼 사고위험 구간(곡선구간, 내리막 경사 구간 등)에 미끄럼방지 포장 시공 시 전면처리 방식 적용
 - 직선 및 평지 구간 노면 마찰력 회복을 목적으로 미끄럼방지포장 시공 시 전면처리 방식이 원칙, 주의환기가 필요한 경우 이격식 적용 가능
 - 관리방안
 - 경과 기간에 따른 미끄럼방지포장(수지계) 관리 철저

구 분	관리방안
시공전	직접 시공업체와 계약 및 시공시 품질확인(마찰저항, 골재상태 등) 철저
24개월 이내	포장상태 수시 확인 및 12개월 단위로 마찰계수 측정
24개월 초과	포장상태 수시 확인 및 자체계획 수립하여 마찰계수 측정

- 유지보수 시행

구 분	성능기준 충족	성능기준 미충족
위험구간 (내리막경사, 곡선구간 등)	지속적인 성능 확인 및 관리	기존 미끄럼방지포장 제거 후 수지계 표면처리 방식 이외의 공법 적용 (24개월 이내의 경우 하자보수 실행)
직선 및 평지 구간	지속적인 성능 확인 및 관리	기존 미끄럼방지포장 제거 후 미끄럼 방지포장 설치 필요 여부 검토 (24개월 이내의 경우 하자보수 실행)
성능기준: 1. 55BPN이상일 것(혼합물의 내마모시험 후 미끄럼저항 성능기준=55BPN 이상) 2. 과도한 골재 및 포장재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3. 그 외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것		

-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제품 공모 용역’은 시청역 교통사고(’24.7월) 발생 이후 ‘보행자 안전강화 종합대책(’24.10월)’의 일환으로 보행자 사고 발생 우려구간에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자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면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제품을 공모하였으나 공모 종료 시기(’25.4월)가 미도래함에 따라 4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 25.4월 현재 공모용역 준공 완료하여 4개 제품이 최종 선정되어 자치구에 시달된 것으로 파악됨.

[표] 보행자 차량방호울타리 공모 선정 제품

연번	1	2	3	4
SB등급	SB1	SB1	SB1	SB1
충돌시험 성적서 발급번호	SB-25-07	SB-25-04	SB-23-14	SB-24-06
이미지				

-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급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이 교부가 선행되고 이후 제품 공모 절차로 인해 안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히 설치해야 할 것임.
- 한편,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보행

자 안전강화 종합대책('24.10월)' 발표 직후 자치구에 특별조정 교부금 43억 58백 만원을 기 교부¹⁵⁾하였으나

- 이후 서울시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공모 추진을 이유로 자치구에 설치 보류를 통보¹⁶⁾하였고 이에 디자인 공모가 완료되기까지 자치구에 교부된 예산은 집행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문제를 낳았음.
- 이는 당초 디자인 공모 및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선행한 후 자치구에 소요 예산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서울시가 사전준비 없이 성급하게 예산부터 교부함에 따라 교부된 예산이 동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이월되는 비효율성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15)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통보', 자치행정과-14130, 2024.10.2..

- 교부사업명: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 추진
- 교부액: 30,310,260,000원 (금 삼백삼억일천이십육만원)
- 사업내용: 도로안전시설물 보강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볼라드/대형화분 설치, 보행로 신설 및 확장 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일반통행 이면도로 안내체계 강화 등)

16)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추진관련 안내', 보행환경개선과-4295호, 2024.10.15..

차량용 방호울타리

- 서울시 차량용 방호울타리 디자인 공모예정으로, 공모 완료 및 별도 제품 선정 기준 안내시까지 설치 보류

나. 교통사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8,000	8,000	8,000	8,000	-	-	100.0%
2023	-	-	9,220	9,220	-	-	100.0%
2022	-	-	-	-	-	-	-

가) 개요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은 80억원으로 이는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 사업 교통개선분담금이며, 80억원 전액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20,217	5,288	-	-	-	-	25,505	12,135	13,353	-	13,353	-	17 (0.1%)
2023	7,938	19,069	-	-	-	-	27,008	16,286	5,288	-	5,288	-	5,433 (20.1%)
2022	39,641	4,055	-	-	124 (-124)	-	43,696	24,233	19,069	4,503	14,566	-	393 (0.9%)

가) 개 요

- 예산액 202억 1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억 88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5억 5백만원으로 이 중 47.6%인 121억 35백만원을 지출하고 52.4%인 133억 53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인 1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

-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1천 7백만원으로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 사업의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임.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교통사업특별회계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제정)' 사업 등 6건, 133억 53백만원을 차년도로 사고이월하였음.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12,702	5,244	41.3%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관리계정)	401-02 감리비	800	121	15.1%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6,600	6,328	95.9%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관리계정)	401-02 감리비	1,380	860	62.3%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	401-01 시설비	887	700	78.9%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	401-02 감리비	100	100	100.0%
계			22,469	13,353	59.4%

-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관리계정)’사업은 파주3운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월드컵로 교차로 개선사업(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입체화, 구룡사거리 평면확장)으로 시설비 66억원 중 95.9%인 63억 28백만원과 감리비 13억 8천만원 중 62.3%인 8억 6천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사업내용

- 위 치 :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로 교차로(구룡사거리,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규 모 : 교차로 개선 2개소
- 구룡사거리 : 평면확장(교량신설 폭6m, L=300m, 현재 공사 중)
-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 입체화(지하차도 신설 폭 4차로 L=540m, 23.5월 준공)
- 사업기간 : '12.12.~'27.03.
- 사 업 비 : 94,196백만원

- 이는 ‘구룡사거리 평면확장’과 관련해 ‘24.3월 구룡교 확장공사에 착공했으나 해당 사업 구간 내 고양시 덕은지구의 오수관로 및 압송관로가 저축되어 지장물 이설을 위한 설계를 위한 기간소요(‘24.5월~11월)로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를 이월한 것임.
- ‘구룡사거리 평면확장’은 당초 구룡사거리를 입체화하려던 것을 설계과정에서 평면확장으로 변경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이 필요해졌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절차가 예상(‘23.2월)보다 6개월이 지연되고
- 고양시의 실시계획인가 및 하천점용허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23회계연도에는 당초 편성했던 공사비 10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있으며,
- 금회 재차 지장물 이설을 위한 기간소요로 대규모 예산을 이월한 상황으로 사업추진 지연뿐만 아니라 예산 활용의 비효율성을 낳았다 할 것임.
- 따라서 계획변경(입체화→평면확장)에 따라 변경된 현장 여건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 없이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바,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 다음으로,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교통관리계정)’사업은 서울 동남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장래교통수요 증가 대비 및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탄천변 동측도로를 구조개선하려는 계속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예산현액 8억 87백만원 중 78.9%인 7억원과 감리비 예산현액 전액인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24.6월 재투자심사 완료 후 추경예산(시설비 7억원, 감리비 1억원) 편성하였으나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조달청 발주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4.12월 공사 계약이 체결되면서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해 사고이월하게 된 것임
- 동 사업이 ‘06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고, ‘07년 설계 용역에 착수했다가 지역주민의 도로 전면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조성 요구 민원으로 노선계획 변경 및 투자심사 이행을 위해 ‘1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 이후 ‘16년 말 노선계획을 재검토한 후, ‘17년부터 사업의 시급성, 구간별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1구간과 2구간으로 분리·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시설계(‘21.5.~‘23.9.)를 시행한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대비 30% 이상 증액(370억원→695억원)되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6조¹⁷⁾에 따라 재

17) 제6조(재심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 <개정 2008. 8. 14., 2010. 12. 31., 2014. 11. 28., 2015. 12. 24., 2020. 9. 11., 2024. 3. 11.>

1. 투자심사 후 총사업비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투자심사 후 물가인상분 및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비 증가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한 사업. 다만, 심사 당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사업비 증가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심사를 실시한다.

투자심사를 '24.6월 득하기에 이른 것임.

- 따라서, 동 사업이 개시된 '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사업 중단, 사업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절차이행 등으로 상당 기간 지체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료됨.

-
2. 투자심사 후 지방채발행액이 100분의 30 이상 늘어난 사업
 3.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없었던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후 재원 조달을 위하여 자체 재원의 100분의 50(시·도 및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인구가 100만 이상인 시·군·구는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사업
 4. 투자심사 후 4년 이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된 사업
 5. 투자심사 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의 변경으로 투자심사기관이 변경된 사업
 6. 투자심사 후 사업부지의 위치가 투자심사의뢰서에 명시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변경된 사업
 7.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

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7,230	7,230	7,231	7,231	-	-	100.0%
2023	3,250	3,250	3,250	3,250	-	-	100.0%
2022	3,825	3,825	3,825	3,825	-	-	100.0%

가) 개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72억 30백만원이고, 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72억 31백만원으로 이는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사업’의 국고보조금(35억원)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37억 3천만원)과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 사업 공사비정산 차액(55만 5천원)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이체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년도이월액			보조금반납액	집행잔액(불용률)
									계	명시	사고		
2024	7,230	3,480	-	-	-	-	10,710	3,732	3,543	3,500	43	3,250	186 (1.7%)
2023	7,495	4,322	-	-	6 (-6)	-	11,817	733	3,480	3,480	-	3,730	3,874 (32.8%)
2022	3,825	17,184	-	-	-	-	21,009	16,686	4,322	-	4,322	-	71 (0.3%)

가) 개 요

- 예산액 72억 3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4억 80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7억 10백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37억 3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43백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인 1억 86백만원이 발생함.

나) 집행잔액(불용액)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은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1개 사업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230	1	186	80.8%

-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은 강동구와 구리시 및 중랑구를 연결하는 한강횡단 도로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예산현액 2억 3천만원 중 80.8%인 1억 86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구리암사대교 건설사업 인가조건 중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대상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점 도출에 난항¹⁸⁾을 겪고 있어 현재로써는 대상지 선정이 불가하여 당초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의 용역 발주가 연내 불가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대체녹지 조성

- 사가정~암사동간 도로개설(구리암사대교건설)사업 관련 교통광장(구리시 아천IC) 설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면적(141,269㎡)에 상응하는 대체녹지 조성 이행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08.4.24.)
- 기존 관리계획 승인된 대체녹지 예정 부지가 자연발생적으로 3등급 → 2등급지로 변경되어 대체녹지 조성계획 변경 필요

< 2011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사항 >

- 내 용 : 환경등급 3~5등급지에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환경 2등급지 수준으로 계속 유지 하되, 행위허가 후 대체녹지에 대한 확인 감독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 위 치 : 구리시 사노동 산 175-21(환경등급 3등급지)
- 규 모 : 55,684㎡ 면적에 수목 식재, 스트로부 잣나무 916주(H 2.0m × W 1.0m)

- 한편, 본 사업인 암사대교 건설은 2006년 6월 공사에 착수해 2014년 11월 21일 용마터널과 동시 개통하고 2016년 12월 암사대교 본선교량 공사를 준공했으나,
- 사업인가조건(중로3-26호선 도로개설, 대체녹지 조성) 이행을 위해 현재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암사대교 본선 공사 준공이후 사업인가조건 이행을 위해 8년여 가량이나 사업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한 사업 마무리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국토부

- 개발제한구역 대체녹지 조성의 취지에 구리한강시민공원(하천) 녹지조성은 맞지 않음
- 대상지가 다수의 부지가 되더라도 찾아서 대체녹지 조성함이 타당함
- 최근 경기도 내 시군구에서 대체녹지 부지 선정하여 협의하였으므로 경기도 내 대체녹지 부지가 없는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

vs.

서울시

- 대체녹지 면적(55,684㎡)을 만족할 만한 대상지는 구리한강시민공원만이 유일한 대상지임
- 구리암사대교 건설로 구리시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였으므로, 당초 관리계획 승인 조건과 같이 구리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대체녹지 조성이 타당함
- 경기도의 시군구에 공문 발송하여 대체녹지 대상지 조사하였지만 대상지 찾지 못함
- 구리시 외 타 시군구의 부지에 대체녹지 조성을 추진한다면 개별 부지의 매입 또는 협의 등 과도한 행정력 소요됨

◆ **사업인가조건**

[중로3-26호선 도로개설]

- 추진근거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사항(2009. 2. 19.)
 - 한강둔치 내 제외지상 진출입부 추가 개설
- 위 치 : 구리시 토평동 781-16 ~ 교문동 611-6
- 규 모 : 폭 12m, 연장 200m

[대체녹지 조성]

- 추진근거 :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조건사항(2008. 4. 24.)
 - 아천IC 교통광장으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상응하는 대체녹지 조성하여 환경 2등급 수준 이상으로 유지
- 내용 : 당초 조성예정지(구리시 사노동 산175-21, 면적 55,684㎡ 규모)의 녹지 기능 회복으로 대체녹지 조성

다) 예산전용 : 해당없음

라) 이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해당없음

바) 예비비 : 해당없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사가정길~암사동간 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 사업 1건에 4천 3백만원임.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사가정길~암사동간도로개설 (암사대교건설)	401-01 시설비	230	43	18.6%
계			230	43	18.6%

- ‘사가정길 ~ 암사동간도로개설(암사대교건설)’사업에서의 사고이월은 시설비 예산현액 2억 3천만원 중 18.6%인 4천 3백만원임.
- 이는 대체녹지 수립 대상지 선정을 위한 대체녹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의 용역비를 이월하려는 것으로 해당 용역의 준공지연은 앞서 동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동일하게 대체녹지 조성대상지 선정 관련 국토교통부와의 합의점 도출이 불가한 상황에 기인한 것임.

라 .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정리보류액 (C)	미수납액 (A-B-C)	수납률 (B/A)
2024	84,827	84,827	84,827	84,827	-	-	100.0%
2023	14,459	14,459	37,754	37,754	-	-	100.0%
2022	98,396	98,396	78,296	78,296	-	-	100.0%

가) 개 요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48억 27백만원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등의 지방채 발행 700억원, ‘가공배전선 지중화’ 등의 국고보조금 135억 89백만원 등으로 848억 27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48억 27백만원 전액 수납하였음([표] 참조).

[표] ‘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수납액	비고
총 계				84,827	84,827	84,827	
도로 계획과	지방채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30,000	30,000	30,000	
		양재대로 구조개선		24,000	24,000	24,000	
		신림~봉천터널 건설		10,000	10,000	10,000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6,000	6,000	6,000	
도로 시설과	국고 보조금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설치		1,950	1,950	1,950	
보행 환경 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11,639	11,639	11,639	
도로 관리과	지방 교부세	노후 포장도로 정비		340	340	340	

도로 시설과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500	500	500	
도로 시설과	보전 수입 등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398	398	398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전용	변경	이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불응률)
									계	명시	사고		
2024	679,740	130,406	3,593	360 (-360)	2,782 (-2,782)	-	813,738	706,821	80,032	15,420	64,612	89	26,795 (3.3%)
2023	851,313	120,886	833	800 (-800)	1,146 (-1,146)	-	973,032	801,229	130,406	26,160	104,246	398	41,000 (4.2%)
2022	753,144	80,354	3,470	194 (-194)	956 (-956)	74,796 (-13,709)	898,055	729,961	120,886	23,711	97,175	-	45,835 (5.1%)

가) 개 요

- 예산액 6,797억 40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304억 6백만원, 예비비 사용액 35억 9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137억 38백만원으로 이 중 7,068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800억 32백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한 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267억 95백만원임.

나) 집행잔액(불용액)

- '24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불용액(268억원)과 불용률(3.3%)은 전년도 대비(불용액(410억원)과 불용률(4.2%)) 다소 감소했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사업을 살펴보면, '노들로 구조개선' 등 20건임([표] 참조).

[표] 불용률 30% 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	도로계획과	노들로 구조개선	8,016	6,791	1,225	15.3%
2	도로계획과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2,729	1,768	948	34.7%
3	도로계획과	성암로 도로확장	500	-	500	100.0%
4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30,047	26,035	3,832	12.8%
5	도로계획과	현릉로 확장	2,409	1,282	1,127	46.8%
6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102,210	92,246	3,620	3.5%
7	도로관리과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20,223	18,080	1,382	6.8%
8	보행환경 개선과	시도 보도 유지관리	25,653	25,236	416	1.6%
9	보행환경 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25,712	15,767	1,141	4.4%
10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23,054	19,213	760	3.3%
11	도로시설과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	176	113	63	35.8%
1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831	4,175	460	9.5%
13	도로시설과	녹번천복개 보수	1,712	1,339	374	21.8%
14	도로시설과	도림천4복개 보수	1,600	1,281	319	19.9%
15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15,753	15,021	383	2.4%
16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조명시설 개선	5,510	5,099	411	7.5%
17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	1,946	1,561	385	19.8%

연번	부서명 (과)	사 업 명	예 산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내역	
					불용액	비율
18	교량안전과	도림천고가 보수공사	2,526	2,186	340	13.5%
19	교량안전과	도림고가 보수공사	25	4	21	84.2%
20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2,615	8,841	702	5.6%

○ ‘노들로 구조개선’사업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해제되어 일반도로화된 노들로의 차로폭 조정 및 보도설치 등 도로구조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기정예산 80억 16백만원 중 15.3%인 12억 25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해당 과업상 보도 포장 신설계획을 조정(보도 포장 → 도막형 포장+가드레일, 연장 1,745m)하고 유원아파트 앞 교차로 설치를 보류하며 감액된 공사비에 해당함.

- 먼저, ‘보도 포장 신설계획 조정’은 보도 포장 신설을 위해서는 기존 차로의 전면/부분통제가 불가피하나 극심한 교통혼잡 유발 또는 기능마비가 예상되어 교통통제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해 당초 양화대교남단IC부터 셋강육교간 보도포장을 신설하려던 것에서 도막형 포장과 가드레일 설치로 변경한 것이며,

◆ 양화대교남단IC~셋강육교간 보도설치 계획 조정

- 변경(안) : (당초)보도 포장→(변경)도막형 포장+가드레일 설치
 - 조정대상 규모 : 보도 1,885m 중 1,745m 변경조정(140m 보도포장 시행)

- 변경사유 : 대상지 차로 협소로 인한 교통통제 불가

※ 기존차로 전면/부분통제가 필요함에 따라 장기간 교통혼잡 극심, 기능마비 우려

- ‘유원아파트 앞 교차로 설치 보류’는 연계사업인 노들고가차도 철거를 전제로 유원아파트 앞 교차로 설치를 계획했었으나 노들고가차도 철거가 중단되면서 고가철거사업 연계지점에 계획했던 유원아파트 교차로 조성은 보류하게 된 것임.

◆ 유원아파트 앞 교차로 설치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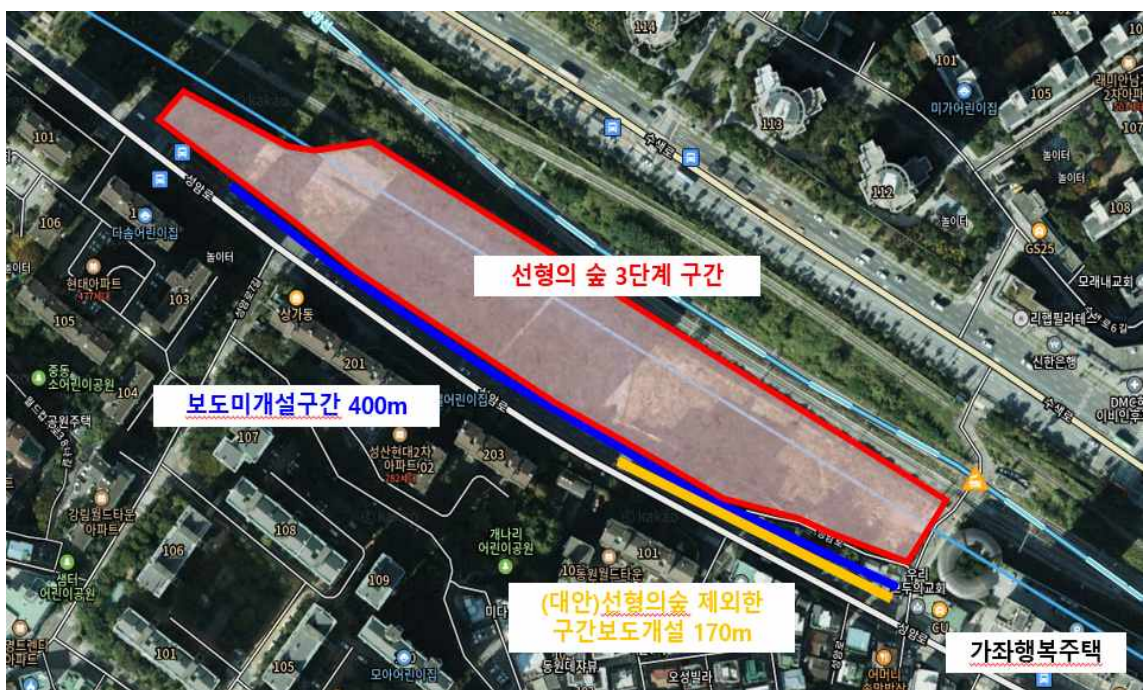
- 변경(안) : (당초)교차로 조성→(변경)교차로를 제외한 보도설치
 - 조정대상 규모 : 교차로 1식 제외(이외 보도설치 추진)
- 변경사유 : 연계사업인 노들고가 철거 중단으로 고가차도 존치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횡단보도 설치기준) : 고가 100m 이내 설치 금지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연계사업(노들고가차도 철거)의 추진상황 변화에 따른 조정은 불가피했다 할 것이나 보도 포장 신설계획 변경은 대상지 현황에 대한 부실한 사전조사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사업은 상습지정체 구간인 중화역 주변 봉화산길을 확장(폭 20→23~30m, 연장 125m)하여 중화재정비촉진지구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27억 29백만원 중 34.7%인 9억 48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동 사업이 ‘24.12월 완료된 사업으로 공사 완료에 따른 공사 집행 잔액 및 소송 판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잔액에 의한 것으로 장기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소요재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 불용예산은 다른 시급한 재정 수요로의 재배분을 저해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수 있으므로 사업 마무리단계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 ‘성암로 도로확장’사업은 마포구에서 철도 유휴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려는 ‘선형의 숲(3단계)’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원과 인접한 보도 미개설 구간(400m) 중 일부구간(170m)에 보도를 조성하여 보행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원 전액을 불용하였음.
- 이는 ‘선형의 숲’ 인접 보도 미개설 구간 400m 중 마포구의 ‘선형의 숲 조성사업’에 230m 구간의 보행로 설치를 포함시키고 나머지 단절구간 170m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설치를 추진하려던 것에서 최종적으로는 마포구의 해당 사업에서 보행로 조성계획이 미반영됨에 따라 보행로 조성사업이 전면 중단(‘24.7월)됨에 따른 것임.



[그림] 위치도

- 이와 관련하여 마포구의 ‘선형의 숲 조성사업’에서 보행로 조성계획이 미반영된 사유는 해당 사업이 미세먼지 차단숲을 설치하고 도시 생태축을 복원하려는 것으로 당초 설계 시 보행로 조성계획이 없었다가,
 - 보행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시 환경부의 승인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보행로 조성을 위한 용지보상, 공사비 등의 증액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동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에서 연계사업의 추진상황 및 제반여건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재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편성 예산 전액을 불용하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 사례라 할 수 있으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노후 포장도로 정비’는 도로포장 불량 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포트홀 등 도로 파손 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022억 1천만원 중 3.5%인 36억 2천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6개 도로사업소의 도로포장 불량구간 정비 등¹⁹⁾에서 시설비의 3.3%인 32억 74백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며, 포트홀 전문 보수장비 구매사업의 계약해지로 인해 자산및물품취득비의 91.5% 2억 96백만원이 불용됨에 따른 것임.

19) 불량구간 정비공사, 맨홀 평탄성 공사, 긴급복구 공사, 물고임정비,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장 고강성 콘크리트 포장, 갈라포장, 쿨링로드 유지보수 등

- 서울시는 우기철 집중 발생하는 포트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기존 작업 대비 약 5배 빠른 작업이 가능한 ‘긴급도로보수트럭’을 구매하고자 2023년 3월 계약을 체결²⁰⁾하고 선금금 2억 94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 업체의 자금난, 부품 수급 차질 등으로 납품이 지연되어 잔여 계약금 2억 94백만원은 결국 2024년으로 사고이월되었고 이후 최종 기한(24.7.31.)까지 납품되지 않아 2024년 9월 최종 계약이 해지되면서 전액 불용 처리된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계약업체의 계약이행 불이행에 따라 업체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한 조치를 취하고, 2023년 지급한 선금금(2억 94백만원)과 계약이행보증금(29백만원)을 환수 완료('24. 12월)하였으며, 선금금 이자(29백만원) 중 미납된 1천 8백만원은 현재 환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 장비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계약체결 전 업체의 이행 능력 및 납품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이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할 것인 바, 향후 유사 사업 추진시에는 계약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20) 장비계약 현황

- 장비명 : 긴급도로보수트럭
 - 제원 : 도로보수트럭(R-1000), 구조물용 충격 완충 장치
- 계약자 : (주)스마트에어챔버(대표 : 윤경원)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남사당로 422-0
- 계약금액 : 587,999,000원(부가세 포함)
 - 선금 지급액 : 293,999,500원(계약금액의 50%)
- 계약기간 : 2023.03.07. ~ 2023.09.03.(180일)
 - 계약상대자 최종 요청기한 : 2024. 7. 31.

관리 및 점검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시설물 품질향상 및 유지관리’는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전문가 자문, 협의회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 관계자 교육으로 도로시설물 관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1억 76백만원 중 35.8%인 63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된 도로시설물 점검용 차량 교체비 6천만원이 전액 미집행됨에 따른 것임.
 - 당초 도로시설과는 노후화된 도로시설물 점검 차량을 교체²¹⁾ 하기 위해 해당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²²⁾에 따라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에 대해 친환경차량 구매가 의무화되고 친환경차량 구매 시 보조금 지원사업²³⁾이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21)

용도	차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비고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현장점검	아반떼 하이브리드	53다 8143	2012.5.2.	내용연수 10년 초과 및 잦은 배터리 방전 등

2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업무용 차량을 모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차량 수급 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다.

23) ‘전기차 및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 친환경차량과

- 근거: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 구매보조금(안): 차량가 전액 지원(예정)
- 보급차종: 전기차 및 수소차

(전기승용, 전기승합, 전기화물, 전기이륜, 수소승용, 수소승합, 수소화물)

※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참조(www.ev.or.kr/portal/carinfoView)

- 차량 교체 추진과정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여 전액 지원받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도 차량을 구매²⁴⁾한 것임.
- 차량 교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련 보조금 사업 지원 여부를 사전에 파악했더라면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됨.

○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는 시도상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도상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중 보수·보강하거나 보행 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48억 31백만원 중 9.5%인 4억 6천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 중 3억 95백만원(불용액의 86%)은 서대문구 미동초교 앞 보도육교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²⁵⁾를 타절준공하면서 불용된 것임.
- 동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보도육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 착공 이후 신규

24) □ 차량 구매 개요

용 도	구매차량	구매방법	소요예산 (천원)
도로시설물 점검 등 유지관리	전기승용차 1대	조달구매	50,320

- 서울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차량 선정 후 조달구매
- ※ 우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화에 따라 친환경차량과 예산 지출

25) 미동초교 앞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위치: 서대문구 충정로2가 164-2

기간: 2023. 12. 28. ~ 2025. 1. 8.

규모: 계단 철거 2개소, 엘리베이터 기초 및 외장 설치 2개소 등

계약상대자: 케이디종합건설(주) 대표 백승묵

총사업비(소요예산): 399,707,000원(시비)

지장물(광케이블 등)이 확인되어 이설 비용이 약 16억원 정도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서대문구는 2025년도 예산편성시 서울시에 예산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무산되었고, 장기간의 공사 중지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되면서 2024년 11월 타절준공(계약해지)²⁶⁾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임.
 - 이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 미흡으로 이설 지장물을 예상치 못해 결국 사업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설계용역비와 착공 준비 등에 투입된 예산이 사업 재추진이 어려워질 경우 매몰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사업비가 불용되는 등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데,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시는 동 사업과 같은 자치구 재배정사업은 자치구로 예산만 재배정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부터 자치구의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에 대해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 ‘한강교량 안전난간 설치공사’는 한강교량 투신자의 자살시도를 차단하고자 한강교량 3개소(잠실대교, 양화대교, 한남대교)에 자살방지 난간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9억 46백만

26) · 타절 준공일자 : 2024. 11. 25.

· 정산금액 : 4,645,000원 (현장대리인 급여 및 기타경비)

※ 정산금액 외 민사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합의

원 중 19.8%인 3억 85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이는 안전난간 설치 시 수반된 교량 점검계단 설치 수량이 지장물 간섭 등의 사유로 감소(33개소→25개소)되어 3억 54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양화대교 구간의 경관조명 재설치 실시설계용역 미시행에 따라 3천 1백만원이 불용된 것임.
- 여기서, ‘양화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안전난간 설치로 인해 철거된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재설치하고자 추진되었으나, 도로시설과에서 양화대교를 포함한 한강교량 전체를 대상으로 ‘한강교량 경관조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포함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용역계약은 해제²⁷⁾함에 따른 것임.

「한강교량 경관조명 개선 기본계획 용역」 - 도로시설과

□ 수립목적

- 한강교량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한강을 서울의 대표 야간명소화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3.4.11. ~ '24.6.28.
- 사업예산 : 219백만원
- 주요 과업내용
 - (가이드라인 마련) 전체 한강교량 경관조명의 개선방향 및 가이드라인 마련
 - (연계사업 구상) 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와 연계한 경관조명 개선 방안
 - (통합제어 구상) 전체 경관조명 점·소등과 조명연출 제어 시스템 구축 등

□ 향후계획

- ~ '25.12. 원효대교, 가양대교 경관조명 개선 완료
- '26. ~ '27. 한강대교 경관조명 개선

27) '양화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해제 검토보고 -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3750호, 2024.3.21.

- 결국, 타 부서 사업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가 좋은빛위원회 심의 과정²⁸⁾에서 뒤늦게 파악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낳았는데, 사업 추진시에는 유관 부서와의 소통과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이나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도림고가 보수공사’는 도림고가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받침 교체 실시설계 용역으로 당해연도 예산현액 2천 5백만원 중 84.2%인 2천 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도림고가의 정밀안전진단('21.4월~'22.5월) 결과에 따라 철도횡단구간인 P6 교각의 받침 24개소를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 교체공사 시행 시 단면 손상 및 손실로 인해 기존 교량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고, 도림고가 철거 시기가 도래²⁹⁾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추진 타당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설계용역을 중도에 타절하고 용역 실투입비용(4백만원)만 집행 후 불용한 것임.

28) 「서울특별시 빗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함.

- 2024년 제4차 좋은빛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2024.3.6.): 한강교량 경관조명 기본계획 수립 중임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선 협의 후 계획안 적용

29) ※ 도림고가 구조개선사업 관련 서울시 도로계획과 진행사항

- '22.11. ~ '23. 11. : 도림고가주변 도로체계구조 타당성조사 용역
- '24.1. ~ '24.6. : LIMAC(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검증의뢰(완료)
- '24.10. ~ : 중앙투자심사 의뢰(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726억원의 고가차도 철거 후 지하차도 설치(안)으로 추진 예정
- '25.1. ~ 12. : 기본 및 실시설계(2025년도 본예산 8억원 편성완료)
- '26. ~ '30. : 공사시행(철거 후 지하차도 설치)

- 이는 동 예산 편성단계에서 도림고가철거 계획이 이미 추진 중에 있었다는 점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받침교체의 실시설계 전 기본설계 단계에서 도림고가 받침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등에서 살펴볼 때 동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신중치 못했음을 방증하는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됨.

다) 예산전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전용은 2건에 3억 60백만원으로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전산개발비로의 전용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 관리’ 사업 공공운영비로의 전용이 발생하였음.

[표] 예산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관리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	60	-	24-03-19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전용
				207-02 전산개발비	-	-	60		
2	도로 시설과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3-02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 위탁사업비	3,705	300	-	24-11-21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유지보수 기전시설물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예산 확보를 위한 예산전용
				201-02 공공운영비	8,041	-	300		

- 먼저, ‘노후 포장도로 정비’ 사업은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³⁰⁾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천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한 것임.
- 이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확보를 위해 재료비 3천 20만원을 전산개발비로 예산 변경한 것으로 나타남.
-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는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대상이며, 전산개발비로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는 점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는 재료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며,
-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 기준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표] 예산전용 및 변경 현황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잔액	향후소요	과부족	전용·변경 금액		전용·변경 후 예산액
							증액	감액	
노후 포장도로 정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90,000	0	90,000	30,000	60,000	0	△60,000	30,000
	재료비 (206-01)	1,000,000	2,974	997,026	950,000	47,026	0	△30,200	969,800
	전산개발비 (207-02)	0	0	0	90,200	△90,200	90,200	0-	90,200

30) 포장도로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구매 계획(도로관리과-7820, 2023.11.13.)

- 데이터 연계 시스템(Relay Software),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관리 솔루션(AIFILTER V2.0), 공간정보 소프트웨어(GeoGate v.3.5)

- 다음으로,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사업은 ‘24년 전기요금 인상(2% 인상)과 신규시설물 인수³¹⁾, 진입차단설비 등 풍수해 대비 방재시설 강화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 범위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공운영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3억원을 공공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라) 이 체 : 해당없음

마) 변경사용

-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변경은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등의 사업에서 총 16건에 27억 82백만원으로
 - 도로계획과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 등 9개 사업은 모두 공기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시설비 예산을 변경해 사용한 것으로
 - 각각의 공기 연장 사유는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사업에서는 문화재청 협의를 위한 기간소요,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사업에서는 수방기간 공사 중지 등에 기인한 것이며,
 - 건설공사의 특성상 현장에서의 예상하지 못한 돌발변수 발생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고 그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상황은 그 부득이함을 인정할 만하다 하겠음.

31) 안양시와 이원화 관리하던 호암2터널을 유지관리 협약(‘23. 12.) 체결로, 서울시에서 유지관리 전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밀한 조사 및 상황 분석을 통해 돌발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치하여 불필요한 공사기간의 연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사업의 ‘위터널 전력설비 이중화사업’은 당초 소속지원(동부도로사업소)이 감리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해당 사업은 특고압(22.9kV) 전력시설물공사로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³²⁾에 따라 자격을 충족한 감리업 등록업체를 통해 감리를 시행해야 하기에 3천 4백 만원을 변경사용한 것이며,

○ ‘터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유해물질 제거 및 환경정비 사업’의 남산1호터널 관리사무소 석면 제거 사업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³³⁾에 따른 감리 선임 의무 대상으로 감리비 예산

3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업자에게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로서 그 소속 직원 중 감리원 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4항에 따른 배치 기준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공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

③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감리의 대상인 설치·보수 공사의 범위, 감리원 배치의 기준, 감리원의 자격 및 그 인정, 감리원의 자격증 발급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

확보를 위해 4천 3백 만원을 변경사용한 것으로,

- 감리대상 여부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적정 편성하도록 주의가 당부됨.
-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은 성수대교 사고 30년을 맞아 교량 안전관리에 대한 시정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학계·전문가 등과 논의하기 위한 안전 관련 포럼을 개최하고자 공공운영비 3백 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 사용한 것임.
- 포럼의 개최 필요성 및 시의성은 충분히 이해되나, 해당 예산은 교량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였던만큼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행사 비용으로의 변경사용은 사업 목적의 일관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사료되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성산대교 성능개선’ 사업은 예산에 미반영된 성산대교 본교 성능개선공사 대안설계 용역의 설계경제성(VE) 검토 수당 지급을 위해 시설비 1천 2백 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변경사용한 것임.

[표] 변경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700	437	-	24-12-09	감리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산 변경사용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내부순환로 (월곡IC)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300	-	437		
2	도로 계획 과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401-01 시설비	800	183	-	24-05-29	문화재청 협의 (정밀발굴조사)에 따른 공기 연장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용역비 증가
		도시고속도로망 확충	천호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401-02 감리비	200	-	183		
3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1 시설비	51,440	1,631	-	24-07-24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시공계획 변경 및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401-02 감리비	2,250	-	1,631		
4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긴급 도로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500	25	-	24-06-25	한강대교 복단 연결램프 교통정체 개선 전기공사 감리를 위한 소요예산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긴급 도로개선 사업	401-02 감리비	-	-	25		
5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긴급 도로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475	20	-	24-12-03	북한산성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의 전기공사 감리를 위한 소요예산 추가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긴급 도로개선 사업	401-02 감리비	25	-	20		
6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4,821	122	-	24-09-26	수방기간 이후 고지수로 공사 재착수 및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29	-	122		
7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4,850	29	-	24-04-22	수방기간 이후 고지수로 공사 재착수 및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	디지털3단지~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	-	29		
8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신당역~신당지하 상가 연결통로 설치	401-01 시설비	1,285	35	-	24-12-03	건설사업 관리용역 기간 연장으로 감리비 증액
		간선도로망 확충	신당역~신당지하 상가 연결통로 설치	401-02 감리비	15	-	35		
9	도로 계획 과	간선도로망 확충	현릉로 확장	401-01 시설비	1,809	95	-	24-12-10	안전분야 감리원 추가투입 등을 위한 감리비 확보
		간선도로망 확충	현릉로 확장	401-02 감리비	600	-	95		

연번	부서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승인 일자	사유
						감액	증액		
10	도로 관리 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6-01 재료비	970	0.2	-	24-03-28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변경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7-02 전산개발비	90	-	0.2		
11	도로 관리 과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6-01 재료비	1,000	30	-	24-03-19	포장도로 관리시스템 개선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변경
		도로 및 도로부속물 관리 (도시개발)	노후 포장도로 정비	207-02 전산개발비	60	-	30		
12	도로 시설 과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1 시설비	2,346	34	-	24-07-10	특고압 전력시설물 공사시행 관련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감리 선임에 위한 감리비 예산 확보
		기전시설물 관리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2 감리비	-	-	34		
13	도로 시설 과	기전시설물 관리	터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유해물질 제거 및 환경정비	401-01 시설비	1,100	43	-	24-09-11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제거 감리 선임에 의한 감리비 예산 확보
		기전시설물 관리	터널·지하차도 관리사무소 유해물질 제거 및 환경정비	401-02 감리비	-	-	43		
14	교량 안전 과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454	3	-	24-10-22	교량시설물 안전관련 포럼 개최 비용 확보
		한강교량관리	한강교량 온라인 안전감시시스템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	-	3		
15	교량 안전 과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3,006	12	-	24-11-07	설계경제성(VE) 검토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변경
		한강교량관리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3 시설부대비	-	-	12		
16	교량 안전 과	일반교량관리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2,208	83	-	24-05-22	물가변동 및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예산 확보
		일반교량관리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354	-	83		
총 변경건수: 16건					100,686	2,782	2,782		

바) 예비비

- 예비비는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3건에 35억 93백 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	사업	지출액	지출일자	지출사유
도로계획과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건설	654	24-11-07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원금 및 이자) 지급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869	24-11-22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 직결램프 설치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금(원금 및 이자) 지급
도로계획과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2,069	24-05-09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당이득금(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 화해권고 결정 수용에 따른 판결금(원금 및 이자) 지급
합계	3건	3,593		

- 먼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6억 54백만원 예비비지출은 해당사업 보상대상지 중 일부인 서초구 방배동 토지(산 130-8번지 임야 661㎡, 128-6번지 250㎡ 및 126번지 266㎡)에 대한 수용보상금액증액 청구소송에서 시가 2심 패소함에 따른 것으로
 - 토지소유주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이 각 토지 인근의 보상선례를 제대로 참고하지 않아 그 가치를 주변 토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한 것이므로 위법·부당함을 주장하였고,
 - 판결은 원고인 토지소유주의 주장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액인 원금 3억 85백만원과 이자 2억 69백만원을 지급함.
- 다음으로, ‘월드컵 대교 건설’의 8억 69백만원 예비비지출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연장된 2차수 공사기간 388일에 대해 간접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시가 패소함에 따른 것으로

- 이는 해당 공사의 시행 중 ‘성산대교(남단) 성능개선공사’의 가교 철거 지연에 따라 직결램프 강교 가설 등이 선행공정 지연 및 간섭으로 지연되었고,
 - 영등포구청(치수과)의 요청에 따른 자원순환센터내 배수시설 추가공사, 교량하부 사면보강방법 변경시공 등의 계약변경으로 인해 공기가 연장되었으나 그에 따른 간접비 증액은 미반영됨에 따라 시가 패소하여 판결금 7억 37백만원과 이자 1억 32백만원을 지급한 것임.
- 마지막으로, ‘유상매각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20억 69백만원 예비비지출은 성북구 장위동 189-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유상매입했던 시유지(성북구 장위동 183-2번지 외 7필지 815.65㎡) 중 일부가 시의 유상매각대상이 아님을 주장하며 그에 대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것임.
- 이는 매매계약 토지 7필지 중 4필지가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 국공유지이므로 유상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어야 하나 이를 포함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었기 때문이며 그에 따른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임.

- 따라서 당해연도 예비비지출 3건 모두 소송에 따른 판결금 지급에 해당하여 사전 예측이 어려운 부득이함이 인정된다 하겠음.

사) 차년도 사고이월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강변북로 연결체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사업의 시설비 등 총 72건에 이월금액은 예산현액(8,137억 38백만원) 대비 7.9%인 646억 12백만원임([표] 참조).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강변북로 연결체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450	225	50.0%
도로계획과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7,497	860	11.5%
도로계획과	내부순환로(월곡IC)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847	115	13.6%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1 시설비	6,853	51	0.7%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401-02 감리비	1,115	220	19.7%
도로계획과	도시고속도로망 재편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250	250	100.0%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401-01 시설비	11,187	3,548	31.7%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재정구간)	401-02 감리비	999	146	14.6%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401-01 시설비	14,670	3,089	21.1%
도로계획과	동부간선도로 확장(녹천교~의정부시계)	401-02 감리비	1,100	90	8.2%
도로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1 시설비	1,295	1,000	77.2%
도로계획과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401-02 감리비	222	200	90.2%
도로계획과	신양재IC 연결로 신설 타당성검토	401-01 시설비	100	56	55.6%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경부간선도로 잠원구간 지하화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600	206	34.4%
도로계획과	올림픽대로 연결램프 신설 타당성조사(양천향교~행주대교 방향)	401-01 시설비	300	130	43.3%
도로계획과	긴급 도로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4,455	869	19.5%
도로계획과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401-01 시설비	16,700	7,001	41.9%
도로계획과	노들섬 보행자전거 교량 건설사업	401-01 시설비	500	283	56.6%
도로계획과	도로건설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401-01 시설비	142	42	29.8%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1 시설비	8,639	388	4.5%
도로계획과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401-02 감리비	461	122	26.4%
도로계획과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401-01 시설비	2,729	13	0.5%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1 시설비	13,061	5,934	45.4%
도로계획과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401-02 감리비	1,971	459	23.3%
도로계획과	서울시 도로확충 및 환경개선 종합 검토	401-01 시설비	500	73	14.5%
도로계획과	서울특별시도 도로대장 정비 용역	401-01 시설비	456	157	34.3%
도로계획과	성동교 확장	401-01 시설비	3,000	1,900	63.3%
도로계획과	성동교 확장	401-02 감리비	390	100	25.6%
도로계획과	수출의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 기본계획	401-01 시설비	314	70	22.4%
도로계획과	신길~여의도 일대 교통소통 개선	401-01 시설비	515	260	50.6%
도로계획과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401-01 시설비	1,572	673	42.8%
도로계획과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	401-02 감리비	128	28	21.9%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1 시설비	23,308	5,751	24.7%
도로계획과	신림~봉천터널 건설	401-02 감리비	2,524	657	26.0%
도로계획과	영동대교 북단 고가차도 철거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197	87	44.2%
도로계획과	이문로 일대 교통개선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118	49	41.6%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401-01 시설비	26,657	693	2.6%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계획과	월드컵 대교 건설	401-02 감리비	2,200	278	12.7%
도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401-01 시설비	30,047	180	0.6%
도로계획과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401-01 시설비	560	336	60.0%
도로계획과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	401-02 감리비	97	85	87.7%
도로계획과	제2차 서울특별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207-01 연구용역비	291	291	100.0%
도로계획과	충암고교 삼거리 지하차도 건설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200	90	45.0%
도로계획과	은평터널 우회도로 건설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300	135	45.0%
도로계획과	사당로 확장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200	175	87.6%
도로관리과	노후 포장도로 정비	401-01 시설비	98,032	6,344	6.5%
도로관리과	노면표시 유지관리 사업	401-01 시설비	19,609	561	2.9%
도로관리과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401-01 시설비	800	417	52.2%
보행환경 개선과	가공배전선 지중화	401-01 시설비	25,712	3,084	12.0%
보행환경 개선과	서울도심 보행환경개선 사업	401-01 시설비	3,708	392	10.6%
도로시설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10,429	3,081	29.5%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401-01 시설비	4,831	196	4.1%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터널,복개,지하차도,세척) 일상유지보수	401-01 시설비	13,460	87	0.6%
도로시설과	북악터널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2,200	1,130	51.4%
도로시설과	구기터널 정비공사	401-01 시설비	1,900	783	41.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유지보수	401-01 시설비	2,132	254	11.9%
도로시설과	노후 도로조명시설 개량 사업	401-01 시설비	15,752	348	2.2%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노후 방재시설 개량	401-01 시설비	6,715	1,795	26.7%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1 시설비	2,488	304	12.2%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노후 전력설비 개량	401-02 감리비	34	8	24.1%

관리부서(과)	사 업 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로시설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개선	401-01 시설비	506	189	37.4%
도로시설과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401-01 시설비	4,100	444	10.8%
교량안전과	1종교량 보강공사	401-01 시설비	829	451	54.3%
교량안전과	1종교량 보강공사	401-02 감리비	249	139	55.8%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1 시설비	12,994	2,147	16.5%
교량안전과	성산대교 성능개선	401-02 감리비	1,373	257	18.7%
교량안전과	성수대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3,000	859	28.6%
교량안전과	한강교량 안전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401-01 시설비	100	50	49.5%
교량안전과	월계1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400	357	89.3%
교량안전과	우이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320	297	92.8%
교량안전과	서소문고가 개축(성능개선)공사	401-02 감리비	225	200	89.1%
교량안전과	교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401-01 시설비	12,615	3,072	24.4%
계			434,230	64,612	14.9%

○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사고위험이 높은 도시고속도로의 구조개선을 위해 한남대교 옹벽(1개소)과 양화대교 접속램프 교량(교대 1개소, 교각 5개소)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12억 95백만원 중 77.2%인 10억원과 감리비 2억 22백만원 중 90.2%인 2억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당초 전년도 12월 완료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공기적정성심의, 공사 중 교통처리대책 심의, 설계안정성 검토 등의 시행으로 ‘24.5월로 지연된 이후 하천점용허가, 공사발주 및 계약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11월

착공하게 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발생한 것임.

- 한편, 동 사업이 '24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절차이행의 지연으로 착공이 지연되면서 기정예산(30억원) 대비 18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예산의 대부분(79%)을 또다시 사고이월한 것임.
- 이는 계획수립 및 실행 모두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기존 상부의 서부간선도로를 일반도로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도로로 재편하기 위해 차로수 및 차로폭을 조정하여 자전거도로, 보도, 녹지 등 친환경 가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130억 61백만원 중 45.4%인 59억 34백만원과 감리비 19억 71백만원 중 23.3%인 4억 59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사업구간 내 안양천 보행접근로(육갑문) 공사와 관련해 하천점용허가,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기간 소요로 착공('24.10월)이 지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로구 주민의 사업추진 반대민원³⁴⁾ 발생에 따라 구로구 구간³⁵⁾ 공사추진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사업개요

○ 위 치 : 영등포구 양평동(목동교)~금천구 독산동(금천C)

- 사업규모 : 왕복 4차로, 연장 8.1km, 친환경공간 119천^m²
- 사업기간 : 2013. 09. ~ 2026. 6.(설계 '19.07.16. ~ '22.08.31.)
- 총사업비 : 85,950백만원

[지상도로 재편 주요내용]

기능재편	자동차 전용도로(80km/hr) → 보조간선도로(50km/hr) 기능 재편
구조개선	도로평탄화(단차 해소), 차로폭 축소(4차로, 21.4m→14.5m) 교차로(4개소) 개선
녹지확충	녹지공간 107,000m ² (소규모 휴게광장, 주민쉼터, 산책공간 등)
접근성 개선	안양천 연결 횡단보도(9개소→23개소), 육교 4개소(재가설1,기존3), 자전거도로 6.1km



《도로평탄화, 차로 폭 축소》

- 동 사업 역시 앞서 언급한 ‘사고위험 도시고속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마찬가지로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21억 9백만원 중 40억원을 감액하고도 금회 대규모 예산(63억 93백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 당해연도 추진계획 수립 시 사전예측이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

34) 고척교 입체교차로 유지, 구일고가 유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반대

35) 사업구간 연장(8.1km) : 영등포구(2.0km), 구로구(4.4km), 금천구(1.7km)

지는 사전절차 이행과 반대민원 등과 관련한 제반여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할 것임.

- ‘성동교 확장’ 사업은 성동교 성수방향의 교통정체를 해소함은 물론 성동소방서 출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성동교 진입도로를 개선하면서 성동교 1개 차로를 확장하려는 사업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30억원 중 63.3%인 19억원과 감리비 3억 9천만원 중 25.6%인 1억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성동교 확장과 관련해 ‘23.6월부터 진행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하천점용허가 협의가 장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해 ‘24년 상반기 동안 공사가 중지되었고,

◆ 하천점용허가 관련 추진경과

- '23. 6. : 하천점용허가 신청(도기본→한강유역환경청)
- '23. 8. : 하천점용허가 신청 보완요청(한강유역환경청→도기본)
 - 확장 교량의 **경간장(기준 35.65m, 신청 21.95m)은 13.7m가 부족**하며, **여유고의 경우 기준(2.0m) 대비 1.92m 부족**으로 이에 대한 보완 필요
- '23.11. : 보완사항 관련 한강유역환경청 검토협의(5회)
 - 보완사항 기준 적용 시 기존 교각과 단차 발생 등 현실적 반영 어려움 지속 이해설득
- '23.12. : 하천점용허가 신청 반려(한강유역환경청→도기본)
- '24. 1.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일시중지
 -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한 하천점용허가 검토 의견에 따라 협의에 상당시간 소요가 예상되어 공사 및 용역 일시중지
- '24. 3. :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한강유역환경청→환경부 감사담당관)
- '24.1.~5. : 사전컨설팅 감사 및 하천점용허가 수시 협의(市, 도기본↔환경청)
- '24. 5. : 하천점용허가 불가의견 최종 회신(환경청→도기본)

-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성동교 확장을 보류하고 진입도로 확장만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착공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 장기간 사업추진 지연요인이 된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살펴보면, 시는 기존 교량 확장사업³⁶⁾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교각 경간장 및 여유고 기준³⁷⁾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은 기존 교량 확장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최종적으로 하천점용 불허가로 회신³⁸⁾된 것임.
- 이처럼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보다는 집행이 확실시되는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사전절차 완료 이후 추경 등을 통해 나머지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참고로, 동 사업의 주요 과업(진입도로 확장, 성동교 1개 차로 확장) 중 ‘성동교 1개 차로 확장’에 대한 추진이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로 전망 또한 불확실하여 향후 사업이 성동교 차로 확장 없이 불완전하게 종료될 경우 동 사업의 효과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36) 기존 성동교의 경간장 및 여유고에 맞춘 확장계획으로 1개 차로 확장 시에도 중량천 수위변화 영향이 미미하고, 기준 준수를 위해 성동교 전체 교량을 인상할 경우 2호선 하부도로 차량통행 불가

37) 경간장 : 기준 35.7m/신청 22m(13.7m부족), 여유고 : 기준 2.0m(1.92m 부족)

38)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계획과-3890, 2024.5.30.

○ ‘중랑천 보행교량 건설’사업은 중랑천으로 단절되어 있는 도봉구와 노원구 간에 보행교량을 건설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당해연도 시설비 5억 6천만원 중 60%인 3억 36백만원과 감리비 9천 7백만원 중 87.7%인 8천 5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이는 당초 ‘24.12월 완료 예정이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하천점용 협의 지연(‘24.11월 완료)으로 준공기한이 ‘25.5월로 연기됨에 따라 잔여 용역비를 이월한 것임.

- 여기서, 동 사업의 당해연도 예산현액 6억 57백만원 중 5억 6천만원(명시이월 5억 58백만원, 사고이월 2백만원)은 전년도(‘23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된 예산이며 나머지 9천 7백만은 ‘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으로,

- ‘23회계연도³⁹⁾로부터 이월된 예산의 재이월과 당해연도 추가경정한 예산의 이월은 신중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경시한 결과라 여겨지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을 위

39) ‘23회계연도 이월사유: 발주 및 유찰(2회), 추진계획 변경, 사전절차 재이행 등으로
‘23.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3.03. : 중랑천 보행교량 기본설계 추진계획 수립
- ‘23.05. : 발주 및 유찰(2회)
- ‘23.07. :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계획 변경 수립 및 사전절차 재이행
- ‘23.11. : 업체 선정 완료, 용역계약 및 사업추진 요청(도로계획과→도기본)
- ‘23.12. : 용역계약 및 사업착수(도기본)
- ‘24.09. : 용역 준공

한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여 도로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의 당해연도 예산현액 8억원 중 52.2.%인 4억 17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금천구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신규 공공부지에 통합 신청사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총 19억원(설계공모비 포함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억 5천만원, 설계감리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도 제1회 추경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1억원(시설비 9억 5천만원+설계감리비 1억 5천만원)을 감액하여 8억원만을 편성한 바 있음.
- 이후, 설계공모를 2024년 8월 완료하고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함에 따라 예산현액 8억원 중 3억 83백만원을 집행하고 용역 준공기한('25. 10월) 미도래로 4억 17백만원을 사고이월 한 것임.
-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는 과거 막대한 예산 투입⁴⁰⁾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무산되면서 대체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소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주변 발생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40) 시흥청사 건립 등 기투입 예산 : 417억원

(시흥청사건립 289억원, 선암장비보관소 조성 37억원, 소공원 조성 91억원)

[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이전 예정 공정표

구 분	'24.10.	'25.	'26. 2.	'26. 3.	'26.11.	'26.12.	'27.1.	'28.	'29.5.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광명교 부분 공사 시행 ('25. 6. ~ '26.11.)					사업소 부지조성 (1개월)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기본 및 실시 설계 완료 ('24.10. ~ '26.2)		공사감리 발주 및 계약, 현장사무실 등 실착공을 위한 사전준비 완료 ('26. 3. ~ '26. 12.)				실착공	공사기간 (약 28개월)	준공

- ‘월계1교 보수공사’는 월계1교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의 당해연도 예산현액 4억원 중 89.3%인 3억 57백만원을 사고 이월함.
- 이는 교량 내 보도폭이 협소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보도 확장을 포함토록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써 실시설계용역(약 4개월) 후 '24.11월에야 공사착공되어 준공기한('25.9월)이 미도래 함에 따른 것임.
- ‘우이교 보수공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월계1교 보수공사’와 통합하여 하나의 공사로 발주·계약된 사업으로, 월계1교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순연됨에 따라 동일하게 '24.11월 공사를 착공하여 '25.9월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당해연도 예산현액 3억 2천만원 중 2억 97백만원(92.8%)을 사고이월함.
- 두 사업이 통합발주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한편으로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통합발주코자 할 때는 각 사업이 불확실성을 내포

하고 있지 않아야 하는 전제조건이 만족해야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사전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음.

마 . 재 난 관 리 기 금 (재 난 계 정)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액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	계	고유목적 사업비 등	예치금	기타	다음연도 이월액
2024	1,076,717	72,609	228,373	0	0	31,713	716,092	27,930	1,076,717	403,691	631,601	11	41,414
2023	1,031,653	29,872	221,695	0	0	32,645	686,071	61,370	1,076,717	242,941	716,092	11	72,609
2022	1,475,780	4,718	473,024	39,000	200,000	16,832	719,036	23,170	1,475,780	759,816	686,071	20	29,872

♣ 관련 용어

수입	전입금 (법정적립액)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보조금	중앙부처에서 기금으로 교부된 금액
	차입금	기금 목적사업을 위해 외부에서 차입하는 자금
	이자 수입	시금고 여유자금 운용 이자수입(공공예금, 정기예금 등) 및 예탁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전년도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모든 자금을 당해연도 회계로 이전하는 금액
	예탁금 원금회수	예탁한 여유자금 중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회수하는 금액
	기타	기타잡수입(과년도 회계 정산 반납금)
지출	고유목적사업비	기금설치조례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출된 사업비
	예치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양한 형태(1,3,6,12개월)로 금융기관(시금고)에 예치한 모든 금액
	예탁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타회계 및 타기금에 예탁하는 계정 간 이동 자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타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 자금
	기타	위원회 운영 기본경비 등

※ 의무적립액 :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도록 된 금액

가) 개 요

- 재난안전실(재난안전정책과) 및 복지실(복지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과 비상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목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법」 제14조,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설치되었으며,
- 당초 재난계정, 재해계정, 구호계정으로 분류되었으나 2005년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개정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이 중 재난계정⁴¹⁾이 재난안전실 소관임.

나) 기금 총괄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의 당해 연도말 조성액⁴²⁾은 전년도말 조성액 7,887억 1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⁴³⁾ 2,880억 16백만원과 사용액⁴⁴⁾ 4,037억 2백만원의 차를 합산한 6,730억 15백만원임.
([표1] 참조)

[표1] 재난관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788,701	-115,686	288,016	403,702	673,015

41)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재원: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구호계정의 경우 1천분의 5

42) 당해연도말 조성액 = 전년도말 조성액+(당해연도 조성액-사용액)

43) 당해연도 조성액 = 자치단체 출연금(전입금)+이자수입+기타

44) 당해연도 사용액 = 목적사업비

다) 기금 수입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수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수입 계획액은 예치금회수(6,292억 92백만원), 전입금(2,283억 73백만원)⁴⁵⁾, 이자수입(100억원), 그외수입(1억 50백만원)을 합한 8,678억 15백만원이었으나
- 코로나19 대응 및 재난예방·응급복구 사업을 위해 15차례⁴⁶⁾에 걸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치금회수(증 868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증 200억원), 그외수입(증 215억 43백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수입계획액을 9,961억 58백만원으로 수정함([표] 참조).

[표] 수입계획액 수정내역

(단위: 백만원)

과목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당초	수정	증감	
합계	867,815	996,158	128,343	1,076,717
공공예금이자수입	10,000	30,000	20,000	31,713
그외수입	150	21,693	21,543	27,930
모집공채	0	0	0	0
전년도이월사업비	0	0	0	72,609
예치금회수	629,292	716,092	86,800	716,092
기타회계전입금	228,373	228,373	0	228,373

45) 최저적립액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6) 주요 변경사유

- 제1차 변경 : 풍수해 대비를 위한 재난예방사업 76건
 - ▶ 재 난 예 방 : 증 12,054백만원 (“현릉로연결도로 등 위험도로사면 보수” 등 76건)
 - ▶ 예치금회수 : 감 12,054백만원
- 제6차 변경 : 의사집단행동 관련 공공병원 비상진료 지원 등 재난예방사업 59건
 - ▶ 재 난 예 방 : 증 63,660백만원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공공병원 비상진료 긴급지원” 등 59건)
 - ▶ 예치금회수 : 감 63,660백만원
- 제8차 변경 : 전년도 결산 의회 승인에 따른 수입계획 변경
 - ▶ 예치금회수 : 617,847백만원 → 797,806백만원 (증 179,959백만원)
- 제12차 변경 : 재난예방사업 세부 통계목별 금액 조정, 기타수입 증가분 반영
 - ▶ 재 난 예 방 : 증감없음
 - ▶ 기 타 수입 : 700백만원 → 21,693백만원 (증 20,993백만원)

- 따라서, 전년도이월액 7,226억 9백만원을 포함한 수정 수입계획현액은 9,961억 58백만원이었으나, 실제로 2022년도 코로나-19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자치구 반환에 따른 기타수입 징수결정액 증가 등으로 1조 767억 17백만원이 최종 수납되었음 ([표] 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수입계획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867,815	996,158	72,609	1,068,767	1,076,717	1,076,717

라) 기금지출 결산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당초 지출계획액 8,678억 15백만원을 9,961억 58백만원으로 수정하였고,
- 전년도이월액 726억 9백만원을 포함한 수정 지출계획현액은 1조 687억 67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4,037억 92백만원을 지출하고 414억 14백만원을 이월하였음([표]참조).

[표]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867,815	996,158	72,609	1,068,767	403,792	41,414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의사집단행동 관련 공공병원, 응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 등을 위해 958억 89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재난예방사업 2,903억 92백만원, 응급복구 173억 23백만원, 연구용역 87백만원, 예치금 적립 6,316억 1백만원 등을 지출하였음([표] 참조).
- 이 중 의사집단행동 관련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출 958억 89백만원의 경우 그 원인과 지출요구의 주체가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라는 점에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출금액에 대한 보전요구를 강하게 취해야 할 것임.

[표] 2024년도 지출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액	비 고
재난예방	의사집단행동	95,889	◦ 공공병원, 응급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 등 ◦ 소방재난본부 119 구급대응 지원인력 등
	재난예방 및 대응	290,392	◦ 지반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 특별점검, 지하차도 침수방지 대책, 노후 방재시설 보수보강, 폭염·한파대책 및 제설대책 등
	소계	386,281	-
응급복구		17,323	◦ 한강공원 침수복구, 우기철 발생 포트홀 긴급 복구 및 장마기간 산림파해 긴급복구 등
연구용역		87	◦ 재난예방·대응·원인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행정운영경비		11	◦ 가금운용심의 자료 제작 및 수당 등
차입금 원리금 상환		-	◦ 지방채 원리금 상환
예치금		631,601	-
총 계		1,035,303	-

- 한편, '20년 4월 2일 신설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 특례⁴⁷⁾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 '20년 당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그간 적립했던 누계 법정 의무예치금을 모두 소진⁴⁸⁾하였으며 '21년부터 의무예치금을 재적립하기 시작하여 '24.12.31일 기준 법정 의무예치금 잔액은 1,117억 2천만원인 것으로 파악됨.

47)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 및 2020년에 발생한 호우·태풍 피해 복구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바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48) 의무예치금액 사용 특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2020년까지의 누적 의무예치금액(306,183백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의무예치금을 재적립 중임. (2024년도말 기준 111,720백만원)

-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24년 총심의액 3,996억 36백만원 중 10.4%인 414억 14백만원을 이월하고 있는데, 이는 재난예방·응급복구사업의 경우 수요발생의 예측불가성 및 긴급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발주 및 계약이 일정치 않아 이월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며,
- 충북 오송지하차도 사고를 계기로 지하차도 진입차단설비 설치 확대 등 풍수해 재난예방사업 지원 증가와 더불어 '25년 풍수해 대책기간 전 사업완료를 위하여 '24년 4분기 발주 재난예방사업 등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로서 상세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2024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52건			61,870	41,414	'24 전체심의액(399,636백만원) 대비 10.4%	
1	재난예방 (1-6. 자연침하 위험구간 공동조사 특별점검)	서울시 도로관리과	1,993	27	1.3%	- 용역 과업추가(관측망 시범설치 2개소)로 관측 망 현장 적용성 등 검증 필요 - 준공 기간 미도래
2	재난예방 (1-17. 한강교량 내진성능 확보 (서강대교외 3개소))	서울시 교량안전과	1,084	424	39.1%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6.)
3	재난예방 (1-58. 중량물재생센터 소화조 2,3처리장 노후 가스저장탱크 교체)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	1,259	1,126	89.4%	- 점검결과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제조·교체 소요기간 등 추가공정을 반영한 납품기한 연기 - 준공 기간 미도래
4	재난예방 (1-59. 난지물재생센터 수문 정비)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800	551	30.6%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1.)
5	재난예방 (1-61. 난지물재생센터 유입 펌프장 변압기 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300	238	79.4%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1.)
6	재난예방 (1-62. 난지물재생센터 유입 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및 정비)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1,000	395	39.5%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1.)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7	재난예방 (1-63. 난지물재생센터 1처리장 공동구 위험구역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550	130	23.7%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4.)
8	재난예방 (1-64. 난지물재생센터 불광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2,000	2,000	100%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5.)
9	재난예방 (1-65. 홍제천 차집관거 보수)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2,000	2,000	100%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5.)
10	재난예방 (1-66.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1,2처리장 소화가스 홀더 정비)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1,100	605	55.0%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6.)
11	재난예방 (1-67.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2 처리장 소화가스 이송배관 교체)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700	409	58.5%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6.)
12	재난예방 (6-5. 수방사 우수유출저감사업 등 사당역 일대 침수예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	서울시 치수안전과	500	217	43.4%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6.)
13	재난예방 (6-42. 답십리로60길 134 주변 외 3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동대문구 치수와	2,419	2,234	92.3%	- 우천으로 인한 작업대기 및 사업구간 추 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함 (’25. 5. 준공 예정)
14	재난예방 (6-43. (강서구) 곰달래로 135 주변 외 5개소 원형관로 보수보강)	강서구 물관리과	1,000	980	98.0%	- 야간 전환 및 현장 신규공종 발생 등 작 업물량증가와 우천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지연 (’25. 5. 준공 예정)
15	연구용역 (6-48. 신종복합재난 파급효과 분석 및 재난전개 시나리오 개발 용역)	서울시 재난안전정책과	230	88	38.0%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5.)
16	재난예방 (6-50. 스마트 인파관리 기법 시범 도입)	서울시 재난안전예방과	393	225	57.4%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3.)
17	재난예방 (6-53. 보행자 사회재난예방 도로 개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	서울시 도로계획과	500	242	48.4%	- ’24. 12월 계약후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사고 이월 필요(용역기간 12개월)
18	재난예방 (6-54.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광진구 도로과	120	120	100%	- ’24/’25년 제설대책 기간 중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사행중인 용역으로 집행시기 미도래로 사고 이월 필요
19	재난예방 (6-55. AI형 교량관리 영상감시 시스템 구축)	서울시 교량안전과	903	883	97.8%	-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사전 타당성에서 요청한 실증과 ISMP용역 수행으로, 과업 의 성과를 위한 사전절차에 기간 소요 - 준공 기간 미도래 (2025. 10.)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20	재난예방 (8-6. 중국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서울시 치수안전과	1,838	1,470	80.0%	- "중곡1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침수개선 및 주민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신속한 펌프장 설계 용역 추진 필요
21	재난 예방 (8-9. 구약빗물펌프장 제진기 설치 교체)	광진구 치수과	1,200	963	80.2%	- 재난(침수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전절차 (계약심의)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일정 지연 으로 사고이월 후 사업 추진
22	재난예방 (8-31. 장안벚꽃로 87 주변 외 1개소 원형관로 보강)	동대문구 치수과	966	960	99.4%	- 우천으로 인한 작업대기 및 사업기간 추가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함 - 준공기한('25. 6.) 미도래로 사고이월
23	재난예방 (8-32. 중계4동 동주민센터 앞대 등 3개소 원형관로 보강)	노원구 치수과	1,092	1,060	97.1%	- 사전 절차 지연 및 10월 말 공사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준공기한('25. 6.) 미도래로 사고이월
24	재난예방 (8-33. (강서구) 강서로43길 49 주변 외 4개소 원형관로 보강)	강서구 물관리과	1,270	1,254	98.8%	- 야간 전환 및 현장 신규공종 발생 등 작 업물량증가와 우천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작업일수 지연 ('25. 5. 준공 예정)
25	재난예방 (8-39. 난곡동 662-3 앞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	관악구 치수과	4,049	60	1.5%	- 사각형거 단면보수 시행('24.9.~12.) 구간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시행을 위한 절대공기('25.6.완료예정) 부족하여 불가피 하게 사고이월이 필요.
26	재난예방 (8-42. 중랑물재생센터 제2방류동 전기설비 이중화)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700	403	57.6%	- '24. 5월말 예산이 배정되어 실시설계 및 사 전심의 등으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절대공기 부족 ('25. 6. 준공 예정)
27	재난예방 (8-45. 중랑물재생센터 청계천 차집관로(좌안) 단면보수)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00	2,000	100%	- 수방기간 청계천 공사 중지(5.15~10.15)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고 준공기한('24.6.30)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28	재난예방 (8-46. 난지물재생센터 2004년 불광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500	2,500	100%	- 준공기한('25. 6.) 미도래로 사고이월
29	재난예방 (8-51. 서울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통합플랫폼 구축)	서울시 도로계획과	390	173	44.4%	-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25.10.)
30	재난예방 (8-53. 지하차도 침수방지사설 설치)	강서도로사업소 기전과	1,120	914	81.6%	-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25. 5. 준공)
31	재난예방 (8-55. 교량 점검방법 다양화 및 고도화 추진)	서울시 교량안전과	400	196	49.0%	- 준공기한('25. 9.) 미도래로 사고이월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2	재난예방 (10-10. 행당동30-4시유지 위험사면 긴급정비)	성동구 공원녹지과	385	385	100%	- 동절기공사시 안전 및 시공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사고이월('25. 5. 준공)
33	재난예방 (10-11. 매봉산 위험석축 보수보강)	성동구 공원녹지과	396	7	1.8%	- 동절기공사시 안전 및 시공품질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사고이월('25. 5. 준공)
34	재난예방 (11-4. 서울안전통합상황실 영상정보 시스템 고도화 구축)	서울시 재난상황관리과	2,413	2,078	86.1%	- 기술규격 검토 및 타 기관 벤치마킹 실시, 정 보화사업 타당성 검토,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25. 5. 준공)
35	재난예방 (11-5. 겨울철 재난(대설) 대비 제설제 구매)	서울시 도로관리과	2,430	1,539	63.3%	- '24/'25년도 제설대책 추진에 따른 사고이월 (2024.11.15.~2025.3.15.)
36	재난예방 (11-8. 공원 및 하천 분야 제설장비 확충)	노원구 토목과 등 3개 부서	300	168	55.9%	- 준공기한('25. 1.) 미도래로 사고이월
37	재난예방 (11-10. 도로타월 자차도 침수대응 전차설비 보강)	동부도로사업소 기전과	840	572	68.1%	- 준공기한('25. 3.) 미도래로 사고이월
38	재난예방 (11-12. 삼각지고가차도 보수)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182	29	16.1%	- 준공기한('25. 3.) 미도래로 사고이월
39	재난예방 (11-14. 노들남고가 보수공사)	남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364	144	39.5%	- 겨울철 콘크리트 품질확보를 위한 공사중지로 절대공기 부족 (2025.5월까지 공기연장)
40	재난예방 (11-15. 한강교량 운행제한 차량 단속 체계 개선)	서울시 교량안전과	1,250	938	75.0%	- 준공기한('25. 3.) 미도래로 사고이월
41	재난예방 (11-32. 산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입 수직구 수문 노후 유압배관 교체)	양천구 치수과	200	85	42.6%	- 준공기한('25. 1.) 미도래로 사고이월
42	재난예방 (11-36.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하천준설)	서초구 물관리과	520	300	57.7%	- 준공기한('25. 3.) 미도래로 사고이월
43	재난예방 [11-50. 서초동 1410주변 외 2개소 노후 하수관로 보강공사(비밀착)]	서초구 물관리과	700	700	100%	- 준공기한('25. 5.) 미도래로 사고이월

연번	세 부 사 업 명 (재배정사업명)	부 서	심의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44	재난예방 (11-52. 중량물재생센터 제방류동 방류펌프 성능개선)	중량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920	914	99.3%	- 입축사류펌프 제조기간 약 6개월 이상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45	응급복구 (11-55. 장마기간 신림천에 발생지 응급복구)	5개 자치구 공원녹지과	2,670	2,215	83.0%	- '24. 10. 공사 발주로 인해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공사 추진의 어려움으로 이월 ('25. 5. 준공)
46	재난예방 (11-64. 풍수해 긴급복구 기동단 운영 관련 장비 확충)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764	1,766	37.1%	- 준공기한('25. 11.) 미도래로 사고이월
47	재난예방 (13-1. 제철야구장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제설시설 설치)	관악구 도로관리과	800	800	100%	- 준공기한('25. 6.) 미도래로 사고이월
48	재난예방 (13-10. 불암산 어울림공원 등 2개소 사방시설 보수정비)	노원구 푸른도시과	500	476	95.1%	- 계약심사 완료('24.12.09.) 및 공사 입찰 소요 일정에 따라 사전절차 지연 - 준공기한('25. 5.) 미도래로 사고이월
49	재난예방 (13-19. 개화동 510-20외 1개소 역사이편 준설)	강서구 물관리과	1,494	627	42.0%	- 준공기한('25. 4.) 미도래로 사고이월
50	재난예방 (13-21.(자연탐사 예방 노후하수도 정비) 수색동 383 앞개 등 2개소 하수관로 정비)	은평구 치수과	771	421	54.6%	- 동절기 굴착 통제에 따른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사고이월 필요. ('25. 5. 준공)
51	재난예방 (13-29. 난지수계(한강) 차집문커 보수)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와	1,500	1,500	100%	- 동절기 공사 추진으로 기상상황(폭설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 준공기한('25. 5.) 미도래로 사고이월
52	재난예방 (14-1. 겨울철 한파차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5개 자치구 안전관리과	1,095	903	82.5%	- 한파 대응 종합대책 기간(2024. 11. 15. ~ 2025. 3. 15.)동안 온기나눔쉼터를 운영한 후 철거 실시 (2025. 4. 용역 준공 예정)

- 다만, 재난예방사업의 발주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확보 등에 따른 이월의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함으로써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여전히 필요하다 하겠음.

바 . 도 로 굴 착 복 구 기 금

기 금 운 용 현 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수 입							지 출				
	계	전년도 이월금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상환금	기타	계	비용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다음연도 이월액
2024	83,383	1,027	-	1,310	31,727	-	49,319	83,383	41,621	40,647	-	1,115
2023	73,023	1,382	-	1,049	26,212	-	44,380	73,023	40,269	31,727	-	1,027
2022	59,703	1,081	-	620	16,893	-	41,109	59,703	32,110	26,211	-	1,382

가) 개 요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차량통행 및 시민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복구공사의 수준향상 및 복구된 도로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89년부터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도로법」 제91조에 의한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과 그 이자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굴착복구 및 복구된 도로의 정비사업, 기타 부대경비 등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음.
 - 수입은 이자수입 13억 10백만원, 예치금회수 317억 27백만원, 기타(원인자부담금) 493억 19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10억 27백만원을 합한 833억 83백만원이며, 이 중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유지운영비, 기금관리비로 기금총액의 49.9%인 416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감리비로 11억 15백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406억 47백만원은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기금 총괄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27억 54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06억 29백만원과 사용액 416억 21백만원의 차(90억 8백만원)를 합한 417억 6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기준 90억 8백만원을 흑자운영 한 것으로 나타남([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E=A+B)
	(A)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도로굴착복구기금	32,754	9,008	50,629	41,621	41,762 (사고이월 1,115 포함)

- 연도별 도로굴착복구기금 누계액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누계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의 징수 현실화로 인해 수입액이 크게 증가함에 비해 굴착복구비 및 전산개발비 등 지출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표]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도 (결산)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2022년도 (결산)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결산)
수 입 액		32,058	40,486	33,119	33,455	41,729	45,429	50,629
	원인자부담금	31,672	39,945	32,780	33,032	41,109	44,380	49,319
	이자수입 등	386	541	339	423	620	1,049	1,310
지 출 액		31,018	36,905	31,453	35,219	32,110	40,269	41,621
굴착복구공사	소 계	30,873	36,673	30,580	33,396	31,195	39,512	41,200
	직접복구비	25,130	32,333	27,332	29,197	26,204	35,324	39,488
	사후정비비	4,382	2,834	1,731	2,761	3,500	2,755	1,712

	감리비및부대비	1,357	1,506	1,517	1,438	1,491	1,433	-
	기타(전산운용 등)	145	232	873	1,823	915	757	421
	사고이월	-	-	598	1,080	1,382	1,027	1,115
	증 감	증 1,040	증 3,581	증 1,068	감 2,844	증 9,619	증 5,160	증 9,008
	연도말 잔액(예치금)	14,491	18,072	19,140	16,893	26,211	31,727	40,647

다) 기금지출 결산

-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당초 지출계획이 406억 71백만원이었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해 46억이 증가한 452억 71백만원으로 수정되었고, 동 지출계획액 대비 89.9%에 해당하는 416억 21백만원을 지출하고 11억 15백만원을 이월시킴 ([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지출결산

(단위: 백만원)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당초	수정 (가)	(나)	(다)=(가)+(나)	(라)	(마)
40,671	45,271	1,027	46,298	41,621	1,115

-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사업인 도로굴착복구공사를 위한 지출 412억이 발생했으며,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 개발 및 유지운영에 4억 19백만원, 기본경비 2백만원이 지출 되었으며([표] 참조),

[표] 도로굴착복구기금 고유목적사업비 운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사업명	사업개요	지출액
비용자성 사업비 (도로굴착 복구기금)	계		41,621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굴착복구 및 굴착으로 인한 노후도로정비 관련 공사비, 감리비, 연구용역비	41,200
	도로굴착 복구시스템 시스템개발 및 유지운영	굴착복구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시스템 기능개선	419
	기본경비	굴착복구 심의회 참석수당	2

- 금회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이월은 3건 11억 15백만원으로 용역의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였는데, 기금 역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차년도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표] 참조).

[표]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다음연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3건			1,115	1,115 (100%)	
1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 사업관리용역(1권역)	도로관리과	210	210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5.2. 계약 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25.4.)로 사고이월

연번	세 부 사 업	부 서	심의금액	이월액 (이월율)	사 유
2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2권역)	도로관리과	540	540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6.4. 계약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25.4.)로 사고이월
3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포장 도로 정비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용역(3권역)	도로관리과	365	365 (100%)	◦ 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4.6.4. 계약 체결 및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25.4.)로 사고이월

[붙 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붙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재난안전실)

연번	시정권고사항	소관실국
1	성과보고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기획조정실(총괄), 홍보기획관, 시민건강국, 재무국, 재난안전실, 감사위원회
9	반복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기획조정실, 교통실, 시민건강국, 재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43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	재난안전실

01. 성과보고서 목표치 설정의 합리성 제고

[성과보고서 / 기획조정실(총괄), 홍보기획관, 시민건강국, 재무국, 재난안전실, 감사위원회]

가. 현황 및 문제점

성과목표 관리제도의 핵심은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시 성과지표의 속성으로 결과(outcome)지표와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이며, 향후 달성도를 의식하여 보수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예산을 고려하여 도전적인 수준의 목표치를 산정해야 함. 그러나 홍보기획관, 시민건강국, 재무국, 재난안전실, 감사위원회 등의 사례에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 기달성 성과보다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여 달성이 용이하도록 하였음

1) 홍보기획관

시민제안 플랫폼 접수되는 시민제안 건수

(단위: 건)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시민제안 플랫폼 접수되는 시민제안 건수(건)	시민제안 플랫폼 접수되는 시민제안 건수	목표	1,200건	1,300건
		실적	1,379건	1,909건
		달성률(%)	114.9%	146.8%

2)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 소관 성과지표

(단위 : 명, 건)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건강동행서비스 제공 실적(명)	건강동행서비스 수혜 인원수	목표	5,000	3,500
		실적	3,620	4,048
		달성률(%)	72.4%	115.6%
치매안심주치의 병의원수(누계) (개소)	치매안심주치의 병의원수 (누계)	목표	600	700
		실적	725	785
		달성률(%)	120%	112%
감염병 정보분석 건수(건)	감염병 정보시스템 및 보고실적 확인	목표	156	200
		실적	229	320
		달성률(%)	147%	160%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실적(건)	농수축산물 안전성 검사 건수	목표	39,098	39,360
		실적	44,006	43,619
		달성률(%)	126%	111%
대기 오염물질 검사실적(건)	대기환경 등 검사 건수	목표	283,102	269,892
		실적	290,270	285,303
		달성률(%)	103%	106%

3) 재무국

계약원가심사의 효율적 수행

(단위 : 명)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원가계산 실무교육 이수인원	원가계산 실무교육 총 이수인원	목표	800	1000
		실적	1,494	1,716
		달성률(%)	187%	172%

4) 재난안전실

재난사고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단위: 건)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안전감찰 시정·모범사례 발굴건수(건)	시정·모범사례 발굴건수	목표	44	46
		실적	74	61
		달성률(%)	168%	132%

'24년도 목표치를 설정한 후('23.10.) 전년도 실적이 매우 높게 나와 실적에 대하여 연말 기준으로 현행화가 가능한 경우에 성과목표를 수정할 수 있음에도 수정·반영하지 아니하여 무난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5)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이행관리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단위: 건)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률	'23년 달성성과	'24년 달성성과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전문가 수	시민전문가 참여 건수	목표	80	110
		실적	230	248
		달성률(%)	287%	225%

나. 시정권고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23년도, '24년도 목표를 비슷하게 설정하거나 3년 통계치, 또는 전년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달성 성과가 대부분 100% 이상 달성하는 등 다수의 성과지표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러한 지적은 지난해 결산 시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정책의 성격상 성과목표를 추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거 실적의 통계치와 더불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효과성을 더하여 적극적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성과평가 시에 이를 달성하려는 노력도에 대한 평가를 추가하는 등의 개선을 실시하여, 달성 용이한 수치만으로 성과목표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소극적 성과제도 운영은 지양해야 함.

09. 반복적으로 집행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예산 집행 / 기획조정실, 교통실, 시민건강국, 재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가. 현황 및 문제점

202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속한 세부사업(총 3,959개) 중 263개 세부사업은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이 5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13개 세부사업은 2024회계연도뿐만 아니라 2023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에도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됨. 즉, 13개 세부사업은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예산현액의 절반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회계연도마다 집행이 저조한 사업내역과 사유가 상이할 수는 있으나,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월이나 불용 등의 집행결과가 발생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인 재정운용 사례라고 볼 수 없음.

아울러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하는 사업별설명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소요예산을 “회계연도 중”에 “전액집행”할 계획으로 기재하고 결산시점에서는 사업 내용과 여건상 불가피하게 이월이나 불용 등이 발생되었다고 설명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반복되는 것은 예산의 편성·의결단계와 결산의 검사·승인단계에서 사업부서가 이질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예·결산에 대한 책임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어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간(2022~2024) 계속 집행률이 50% 미만인 세부사업 현황(1/2)

(단위 : 천원, %)

실·본부국 (부서)	회계	세부사업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기획조정실 (창의행정 담당관)	일반회계	시정시책 연구용역	2024	1,068,000	441,419	41.3	85,461	-	541,119
			2023	1,233,680	463,000	37.5	68,000	-	702,680
			2022	1,695,673	634,828	37.4	233,680	-	827,165
교통실 (택시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2024	3,000	400	13.3	-	-	2,600
			2023	6,000	-	0.0	-	-	6,000
			2022	8,500	-	0.0	-	-	8,500
교통실 (물류정책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화물 위법행위 관련 포상금	2024	1,000	-	0.0	-	-	1,000
			2023	3,600	200	5.5	-	-	3,400
			2022	6,500	400	6.1	-	-	6,100
시민건강국 (공공의료과)	일반회계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2024	6,250,000	192,444	3.0	1,998,880	-	4,058,676
			2023	5,484,020	1,233,867	22.4	4,250,000	-	152
			2022	2,355,500	1,126,480	47.8	1,229,020	-	-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일반회계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2024	4,068,573	641,421	15.7	3,427,135	-	17
			2023	3,855,086	1,399,551	36.3	2,450,986	-	4,548
			2022	1,487,000	-	0.0	1,387,000	-	100,000
시민건강국 (서북병원)	일반회계	서북병원 결핵관리사업 (국비)	2024	275,426	71,350	25.9	-	102,037	102,037
			2023	383,980	97,410	25.3	-	143,284	143,284
			2022	380,900	87,325	22.9	-	146,787	146,787

※ 1. 예비비는 제외

2. 천원 단위 미만의 수치와 소수점 1자리 미만의 비율은 절사한 것임

3. 세부사업의 명칭과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4. 재난안전실(도로계획과)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은 2023회계연도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 개선분담금계정”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된 것이나,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의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된 것임

최근 3년간(2022~2024) 계속 집행률이 50% 미만인 세부사업 현황(2/2)

(단위 : 천원, %)

실·본부·국 (부서)	회계	세부사업	회계연도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집행률 ②/①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재난안전실 (보행환경 개선과)	일반회계	도로부지 실태조사	2024	40,000	9,004	22.5	-	-	30,996
			2023	40,000	4,715	11.7	-	-	35,284
			2022	50,000	18,465	36.9	-	-	31,534
재난안전실 (보행환경 개선과)	일반회계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2024	958,951	474,632	49.4	65,626	-	418,692
			2023	1,147,570	259,081	22.5	560,451	-	328,037
			2022	963,570	255,591	26.5	694,120	-	13,858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태릉~구리IC 간 도로확장	2024	6,750,000	-	0.0	3,500,000	3,250,000	-
			2023	10,846,120	46,414	0.4	3,250,000	3,730,250	3,819,456
			2022	3,825,000	53,879	1.4	3,771,120	-	-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 (교통관리계 정)	2024	987,000	187,000	18.9	800,000	-	-
			2023	3,914,400	270,280	6.9	187,000	-	3,457,120
			2022	2,020,519	220,519	10.9	1,800,000	-	-
재난안전실 (도로계획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성암로 도로확장	2024	500,000	-	0.0	-	-	500,000
			2023	538,637	25,982	4.8	500,000	-	12,655
			2022	50,000	1,447	2.8	38,637	-	9,914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2024	3,227,000	12,000	0.3	-	-	3,215,000
			2023	1,300,000	-	0.0	-	-	1,300,000
			2022	4,780,000	11,380	0.2	1,300,000	-	3,468,620
도시기반 시설본부 (총무부)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서부선 건설(민자)	2024	1,569,470	147,758	9.4	1,421,712	-	-
			2023	1,520,000	43,250	2.8	365,470	-	1,111,280
			2022	370,000	2,430	0.6	350,000	-	17,570

※ 1. 예비비는 제외

2. 천원 단위 미만의 수치와 소수점 1자리 미만의 비율은 절사한 것임

3. 세부사업의 명칭과 소관 실·본부·국 및 부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4. 재난안전실(도로계획과)의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은 2023회계연도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 개선분담금계정”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된 것이나, 2023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기존의 교통개선분담금계정이 교통관리계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2024회계연도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에 속한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된 것임

나. 시정권고

13개 세부사업은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소액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나,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 발생규모가 줄어들어 가용재원의 규모 역시 축소되는 현 상황에서는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집행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울시는 매년 집행이 저조한 상황이 반복되는 세부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여건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향후의 예산편성과 운용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함.

43.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불용액 과다 발생

[예산 집행 / 재난안전실]

가. 현황 및 문제점

지방재정법 제6조(회계연도)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 예산은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 50조(세출 예산의 이월) 제1항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 50 조 제2항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사고이월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연도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사업이어야 원칙적으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 경우라도 단순한 내부 사유나 계획 미비 등이 아닌 불가피한 사건이어야 함.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의거하여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지출해야 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또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집행가능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은 이월사업 불용규모가 과다한 문제점이 있음.

전년도 이월사업비 불용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명	세부사업	통계목	'23→'24년 이월액	집행액	'24→'25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도시개발 특별회계	현릉로 확장	시설비	1,714	587	-	1,127	65.8%
도시개발 특별회계	노후 포장도로 정비	자산및물 품취득비	294	-	-	294	100%
도시개발 특별회계	도로시설물(자치 구위임관리) 긴급보수	시설비	1,242	814	-	428	34.5%
일반회계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시설비	560	176	-	384	68.5%

위 표와 같이 전년도 이월된 사업비 중 일부는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현릉로 확장사업은 2023년 이월액 약 1,714백만원 중 1,127백만원 이상이 집행되지 못해 불용률 65.8%임.

현릉로 확장 사업은 2023년 내곡·세곡지구 등 동남권 지역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로 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사업으로, '24.4월 보상이 필요 없는 구간(현릉로 연결로)부터 실착공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현릉로 확장 사업 구간 내 현릉로 연결로와 내곡IC 연결로의 기능상 중복으로 '24.10월 내곡IC 투자심사 결과 해당 내용에 대한 조건부 의견이 있어 현릉로 확장사업 내 현릉로 연결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비를 집행할 수 없어 집행잔액 발생함.

노후 포장도로 정비사업은 도로포장 불량구간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포트홀 등 도로 파손 구간을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임.

도로시설물(자치구 위임관리) 긴급보수 사업은 시도 상의 자치구 위임

관리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를 지원하여 위험 요인을 해소하는 사업임.

거리가게(노점)의 제도권 내 관리를 확대하여 시민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판매대 교체, 보도 및 전기 시설 등 기반 시설 보수 정비 등을 하는 사업임.

나. 시정권고

예산의 편성과 이월 계획의 수립 시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월된 예산은 회계연도 내에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각별히 유의하여함. 예산의 집행에 있어 이월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은 재정의 건전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이월은 가능한 최소화할 것을 권고함.